国税徵収法

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四十七号

最終更新: 令和元年五月三十一日法律第十六号

施行日: 令和元年十二月十六日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国税の滞納処分その他の徴収に 関する手続の執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定 め、私法秩序との調整を図りつつ、国民の納 税義務の適正な実現を通じて国税収入を確保 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 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国税 国が課する税のうち関税、とん税、 特別とん税及び特別法人事業税以外のものを いう。
- 二 地方税 地方税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二十六号) 第一条第一項第十四号 (用語) に規定する地方団体の徴収金 (都及び特別区のこれに相当する徴収金を含む。)及び特別法人事業税及び特別法人事業譲与税に関する法律 (平成三十一年法律第四号)第二条第九号 (定義)に規定する特別法人事業税に係る徴収金をいう。
- 三 消費税等 消費税、酒税、たばこ税、揮発油税、地方揮発油税、石油ガス税及び石油石

국세징수법

1959년 법률 제147호

최종개정: 2019년 5월 31일 법률 제16호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세체납처분 및 그 밖에 징수에 관한 절차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법 질서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통하여 국세수입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뜻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관세, 톤 세, 특별톤세 및 특별법인사업세 이외의 것 을 말한다.
- 2. 지방세: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 226호) 제1조제1항제14호(용어)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의 징수금(도 및 특별구의 이 것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포함한다) 및 「특별법인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양여세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4호) 제2조제9호(정의)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인사업세와 관련된 징수금을 말한다.
- 3. 소비세 등: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 및 석유석탄

炭税をいう。

四 附帯税 国税のうち延滞税、利子税、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加算税、不納付加算税及び重加算税をいう。

五 公課 滞納処分の例により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債権のうち国税(その滞納処分費を含む。以下同じ。)及び地方税以外のものをいう。

六 納税者 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国税 (国税通則法 (昭和三十七年法律第六十六号) 第二条第二号 (定義) に規定する源泉徴収等による国税を除く。) を納める義務がある者及び当該源泉徴収等による国税を徴収して国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者をいう。

七 第二次納税義務者 第三十三条から第三十 九条まで(合名会社等の社員等の第二次納税 義務)又は第四十一条(人格のない社団等に 係る第二次納税義務)の規定により納税者の 国税を納付する義務を負う者をいう。

八 保証人 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納税者の国税の納付について保証をした者をいう。

九 滞納者 納税者でその納付すべき国税をその納付の期限(国税通則法第四十七条第一項 (納税の猶予の通知等)に規定する納税の猶 予又は徴収若しくは滞納処分に関する猶予に 係る期限を除く。)までに納付しないものを いう。

十 法定納期限 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 り国税を納付すべき期限 (次に掲げる国税に 세를 말한다.

4. 부대세: 국세 중 연체세, 이자세, 과소신 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말한다.

5. 공과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6. 납세자: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세(「국세통칙법」(1962년 법률 제66호) 제2조제2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등에 의한 국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할 의무 가 있는 자 및 해당 원천징수 등에 의한 국 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7. 제2차 납세의무자: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합명회사 등의 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제41조(인격이 없는 사단 등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8. 보증인: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 납부에 대해 보증을 한 자를 말한다.

9. 체납자: 납세자로서 납부할 국세를 납부 기한(「국세통칙법」제47조제1항(납세유예 의 통지 등)에서 규정하는 납세의 유예 또 는 징수나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와 관련된 기한을 제외한다)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0. 법정납부기한: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다음에 열거

ついては、それぞれ次に定める期限又は日) を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国税通則法第三 十八条第二項(繰上請求)に規定する繰上げ に係る期限及び所得税法(昭和四十年法律第 三十三号)若しくは相続税法(昭和二十五年 法律第七十三号)の規定による延納(第百五 十一条の二第一項(換価の猶予の要件等)に おいて「延納」という。)、国税通則法第四 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納税の猶予又は徴収 若しくは滞納処分に関する猶予に係る期限 は、当該国税を納付すべき期限に含まれない ものとする。

イ 国税通則法第三十五条第二項(申告納税方式による国税等の納付)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国税 その国税の額をその国税に係る同法第十七条第二項(期限内申告)に規定する期限内申告書に記載された納付すべき税額とみなして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を適用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国税を納付すべき期限

ロ 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国税を納付すべき期限とされている日後に納税の告知がされた国税(ハ又はニに掲げる国税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当該期限

ハ 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一定の事実 が生じた場合に直ちに徴収するものとされて いる賦課課税方式による国税 当該事実が生じ た日

ニ 附帯税又は滞納処分費 その納付又は徴収 の基因となる国税を納付すべき期限(当該国 税が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国税に該当する場 合には、それぞれ当該国税に係るイからハま 하는 국세의 경우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기한 또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국세통칙법」 제38조제2항(조기납부청구)에서 규정하는 조기납부와 관련된 기한 및 「소득세법」(1965년 법률 제33호) 또는 「상속세법」(1950년 법률 제73호)의 규정에 따른 연납(제151조의2제1항(환가유예의 요건 등)에서 "연납"이라 한다), 「국세통칙법」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 유예 또는 징수나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와 관련된 기한은 해당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국세통칙법」 제35조제2항(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국세 등의 납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국세: 국세 금액을 국세와 관련된 같은 법 제17조제2항(기한 내 신고) 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된 납 부해야 할 세액으로 보고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경우 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

나.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으로 정해진 날 이후에 납 세고지가 된 국세(다목 또는 라목에 열거하 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당 기한

다.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징수하도록 정 해진 부과과세 방식에 의한 국세: 해당 사실 이 발생한 날

라. 부대세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 또는 징수의 기인이 되는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 (해당 국세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でに掲げる期限(地価税に係る過少申告加算税、無申告加算税及び国税通則法第三十五条第三項に規定する重加算税については、先に到来する期限)又は日)

十一 徴収職員 税務署長その他国税の徴収に 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員をいう。

十二 強制換価手続 滞納処分(その例による 処分を含む。以下同じ。)、強制執行、担保 権の実行としての競売、企業担保権の実行手 続及び破産手続をいう。

十三 執行機関 滞納処分を執行する行政機関 その他の者(以下「行政機関等」とい う。)、裁判所(民事執行法(昭和五十四年 法律第四号)第百六十七条の二第二項(少額 訴訟債権執行の開始等)に規定する少額訴訟 債権執行にあつては、裁判所書記官)、執行 官及び破産管財人をいう。

第三条(人格のない社団等に対するこの法律 の適用)

法人でない社団又は財団で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があるもの(以下「人格のない社団等」という。)は、法人とみなして、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第四条 削除

第五条 削除

第六条 削除

第七条 削除

국세와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기한(지가세와 관련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국세통칙법」 제3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가산세의 경우는 먼저도래하는 기한) 또는 날)

11. 징수 직원: 세무서장 및 그 밖에 국세 징수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 다.

12. 강제환가절차: 체납처분(그 예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제집행, 담 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기업담보권의 실 행절차 및 파산절차를 말한다.

13. 집행기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한다), 법원(「민사집행법」(1979년 법률제4호) 제167조의2제2항(소액소송 채권집행의 개시 등)에서 규정하는 소액소송 채권집행은 법원 서기관), 집행관 및 파산관재인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보고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第二章 国税と他の債権との調整 第一節 一般的優先の原則

第八条 (国税優先の原則)

国税は、納税者の総財産について、この章に 別段の定がある場合を除き、すべての公課そ の他の債権に先だつて徴収する。

第九条(強制換価手続の費用の優先)

納税者の財産につき強制換価手続が行われた場合において、国税の交付要求をしたときは、その国税は、その手続により配当すべき金銭(以下この章において「換価代金」という。)につき、その手続に係る費用に次いで徴収する。

第十条 (直接の滞納処分費の優先)

納税者の財産を国税の滞納処分により換価したときは、その滞納処分に係る滞納処分費は、次条、第十四条から第十七条まで(担保を徴した国税の優先等)、第十九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先取特権等の優先)及び第二十三条(法定納期限等以前にされた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の優先等)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換価代金につき、他の国税、地方税その他の債権に先立つて徴収する。

第十一条(強制換価の場合の消費税等の優 先)

国税通則法第三十九条(強制換価の場合の消費税等の徴収の特例)又は輸入品に対する内国消費税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年法律第三十七号)第八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

제2장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조정 제1절 일반적 우선의 원칙

제8조(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는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해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과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9조(강제환가절차 비용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교부요구를 했을 때에는 국세는 절차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전(이하이 장에서 "환가대금"이라 한다)에 대해 절차와 관련된 비용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환가했을 때에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체납처분비는 다음 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담보를 징수한 국세의 우선 등),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선취특권 등의 우선) 및 제23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 등)의 규정에도불구하고 환가대금에 대해 다른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1조(강제환가의 경우 소비세 등의 우선)

「국세통칙법」 제39조(강제환가의 경우 소비세 등의 징수의 특례) 또는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955년 법률 제37호) 제8조제1항제3호 또

は第七号(公売又は売却等の場合における内 国消費税の徴収)の規定により徴収する消費 税等(その滞納処分費を含む。)は、次条か ら第十七条まで(差押先着手による国税の優 先等)及び第十九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先 取特権等の優先)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 徴収の基因となつた移出又は公売若しくは売 却に係る物品の換価代金につき、他の国税、 地方税その他の債権に先だつて徴収する。

第二節 国税及び地方税の調整

第十二条 (差押先着手による国税の優先)

納税者の財産につき国税の滞納処分による差押をした場合において、他の国税又は地方税の交付要求があつたときは、その差押に係る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交付要求に係る他の国税又は地方税に先だつて徴収する。

2 納税者の財産につき国税又は地方税の滞納 処分による差押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国税 の交付要求をしたときは、その交付要求に係 る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差押に 係る国税又は地方税(第九条(強制換価手続 の費用の優先)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費用を 除く。)に次いで徴収する。

第十三条(交付要求先着手による国税の優 先)

納税者の財産につき強制換価手続(破産手続を除く。)が行われた場合において、国税及び地方税の交付要求があつたとき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先にされた交付要求に係る国税以は地方税に先だつて徴収し、後にされた交付要求

는 제7호(공매 또는 매각 등의 경우 내국소비세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소비세 등(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조부터 제17조까지(압류선착수에 의한 국세의우선 등)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선취특권 등의 우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의원인이 된 이출이나 공매 또는 매각과 관련된 물품의 환가대금에 대해 다른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제12조(압류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교부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압류와 관련된 국세는 환가대금에 대해 교부요구와 관련된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장수한다.

②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은 경우, 국세교부요구를 했을 때에는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는 환가대금에 대해 압류와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제9조(강제환가절차 비용의우선)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3조(교부요구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절차(파산절 차를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교부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환가대 금에 대해 먼저 행해진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는 나중에 행해진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나 に係る国税は、先にされた交付要求に係る国 税又は地方税に次いで徴収する。

第十四条(担保を徴した国税の優先)

国税につき徴した担保財産があるときは、前 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国税は、その 換価代金につき他の国税及び地方税に先だつ て徴収する。

第三節 国税と被担保債権との調整

第十五条(法定納期限等以前に設定された質権の優先)

納税者がその財産上に質権を設定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質権が国税の法定納期限 (次の各号に掲げる国税につ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とし、当該国税に係る附帯税及び滞納処分費については、その徴収の基因となった国税に係る当該各号に定める日とする。以下「法定納期限等」という。)以前に設定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質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 一 法定納期限後にその納付すべき額が確定した国税(過怠税を含む。) その更正通知書若しくは決定通知書又は納税告知書を発した日(申告納税方式による国税で申告により確定したものについては、その申告があつた日)
- 二 法定納期限前に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一項(繰上請求)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繰上請求」という。)がされた国税 当該請求に係る期限

중에 행해진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는 먼저 행해진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4조(담보를 징수한 국세의 우선)

국세에 대해 징수한 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환가대금에 대해 다른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절 국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제15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된 질권 의 우선)

- ① 납세자가 재산상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이 국세의 법정납부기한(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국세의 경우는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날로 하고, 해당 국세와 관련된 부대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징수의 원인이 된 국세와 관련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이하 "법정납부기한 등"이라 한 다) 이전에 설정된 것일 때에는 국세는 환 가대금에 대해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 1. 법정납부기한 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국세(과태세를 포함한다): 경정통지 서, 결정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국세로서 신고에 의해 확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가 있은 날)
- 2. 법정납부기한 전에 「국세통칙법」 제38 조제1항(조기납부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 (이하 "조기납부청구"라 한다)가 된 국세: 해당 청구와 관련된 기한

三 第二期分の所得税(所得税法第百四条第一項(予定納税額の納付)(同法第百六十六条(申告、納付及び還付)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第二期において納付すべき所得税をいい、同法第百十五条(出国をする場合の予定納税額の納期限の特例)

(同法第百六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所得税で同法第百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第一期において納付すべき所得税の納期限後に納付すべきものを含む。) 当該第一期において納付すべき 所得税の納期限

四 相続税法第三十五条第二項(更正及び決定の特則)の規定による更正又は決定により納付すべき税額が確定した相続税又は贈与税 その更正通知書又は決定通知書を発した日

四の二 地価税(国税通則法第二条第七号(定義)に規定する法定申告期限(以下この号において「法定申告期限」という。)までに納付するもの及び第一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その更正通知書又は決定通知書を発した日(申告により確定したものについては、その申告があつた日(その日が当該地価税の法定申告期限前である場合には、当該法定申告期限))

五 再評価税で確定した税額を二以上の納期に おいて納付するもののうち最初の納期後の納 期において納付する再評価税 その再評価税の 最初の納期限

五の二 国税通則法第十五条第三項第二号から

3. 제2기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예정 납세액의 납부)(같은 법 제166 조(신고, 납부 및 환급)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제2기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하며, 같은 법 제115 조(출국을 하는 경우 예정 납세액의 납부기한의 특례)(같은 법 제1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소득세로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기에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납부기한 후에 납부해야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제1기에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납부기한

4. 「상속세법」 제35조제2항(경정 및 결정의 특칙)의 규정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발부한 날

4의2. 지가세(「국세통칙법」 제2조제7호 (정의)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이하 이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는 것 및 제1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발부한날(신고에 의해 확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가 있은 날(그 날이 해당 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는 해당 법정신고기한))

5. 재평가세로 확정한 세액을 둘 이상의 납기에 납부하는 것 중 최초 납기 후의 납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 재평가세의 최초 납부기한

5의2. 「국세통칙법」 제15조제3항제2호부

第四号まで及び第六号(納税義務の成立及び その納付すべき税額の確定)に掲げる国税 (法定納期限以前に納付されたものを除く。) その納税告知書を発した日(納税の告知を受 けることなく法定納期限後に納付された国税 については、その納付があつた日)

六 第二十四条第二項(譲渡担保権者の物的納税責任)又は第百五十九条第三項(保全差押え)(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告知し、又は通知した金額の国税 これらの規定による告知書又は通知書を発した日

七 相続人(包括受遺者を含む。以下同じ。)の固有の財産から徴収する被相続人(包括遺贈者を含む。以下同じ。)の国税及び相続財産から徴収する相続人の固有の国税(相続(包括遺贈を含む。以下同じ。)があつた日前にその納付すべき税額が確定したもの(国税通則法第十五条第三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六号に掲げる国税については、その日前に納税告知書を発した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限る。)その相続があつた日

八 合併により消滅した法人(以下「被合併法人」という。)に属していた財産から徴収する合併後存続する法人又は当該合併に係る他の被合併法人の固有の国税及び合併後存続する法人の固有の財産から徴収する被合併法人の国税(合併のあつた日前にその納付すべき税額が確定したものに限る。)その合併のあった日

九 分割を無効とする判決の確定により当該分割をした法人(以下この号において「分割法

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납세의무의 성립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확정)에 열거하는 국세 (법정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된 것을 제외한다):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납세고지를 받지 못하여 법정납부기한 후에 납부된 국세의 경우는 납부를 한 날)

6. 제24조제2항(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또는 제159조제3항(보전압류)(「국세통칙법」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지하거나 통지한금액의 국세: 이들 규정에 따른 고지서 또는통지서를 발부한 날

7. 상속인(포괄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하는 피상속인(포괄유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세 및 상속재산에서 징수하는 상속인 고유의 국세 (상속(포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날 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것(「국세통칙법」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열거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그 날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상속이 있은 날

8.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에 속해 있던 재산에서 징수하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해당 합병과 관련된 다른 피합병법인 고유의 국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하는 피합병법인의 국세(합병이 있은 날 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것에 한정한다): 합병이 있은 날

9. 분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당 분할을 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분

人」という。)に属することとなつた財産から徴収する分割法人の固有の国税及び分割法人の固有の財産から徴収する分割法人の国税通則法第九条の二(法人の合併等の無効判決に係る連帯納付義務)に規定する連帯して納付する義務に係る国税(当該判決が確定した日前にその納付すべき税額が確定したものに限る。)当該判決が確定した日

十 分割により事業を承継した法人(以下この 号において「分割承継法人」という。)の当 該分割をした法人から承継した財産(以下こ の号において「承継財産」という。)から徴 収する分割承継法人の固有の国税、分割承継 法人の固有の財産から徴収する分割承継法人 の国税通則法第九条の三(法人の分割に係る 連帯納付の責任)に規定する連帯納付の責任 (以下この号において「連帯納付責任」とい う。)に係る国税及び分割承継法人の承継財 産から徴収する分割承継法人の連帯納付責任 に係る当該分割に係る他の分割をした法人の 国税(分割のあつた日前にその納付すべき税 額が確定したものに限る。)その分割のあつ た日

十一 第二次納税義務者又は保証人として納付 すべき国税 第三十二条第一項 (第二次納税義 務の通則) 又は国税通則法第五十二条第二項 (担保の処分) の納付通知書を発した日

2 前項の規定は、登記(登録及び電子記録債権法(平成十九年法律第百二号)第二条第一項(定義)に規定する電子記録を含む。以下同じ。)をすることができる質権以外の質権については、その質権者が、強制換価手続において、その執行機関に対し、その設定の事

할법인"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재산에서 징수하는 분할법인 고유의 국세 및 분할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하는 분할법인의 「국세통칙법」 제9조의2(법인의 합병 등의 무효판결과 관련된 연대납부의무)에서 규정하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와 관련된 국세(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 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것에 한한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

10. 분할에 의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하이 호에서 "분할승계법인"이라 한다)의 해당 분할을 한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이하이 호에서 "승계재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분할승계법인 고유의 국세, 분할승계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하는 분할승계법인의 「국세통칙법」 제9조의3(법인의 분할과 관련된 연대납부의 책임)에서 규정하는 연대납부의 책임(이하이 호에서 "연대납부책임"이라 한다)과 관련된 국세 및 분할승계법인의 연대납부책임과 관련된 해당 분할과 관련된다른 분할을 한 법인의 국세(분할이 있은 날 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것에한한다): 분할이 있은 날

11.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납부할 국세: 제32조제1항(제2차 납세의무 의 통칙) 또는 「국세통칙법」 제52조제2항 (담보의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

② 전항의 규정은 등기(등록 및 「전자기록 채권법」(2007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는 질권 이외의질권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강제환가절차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설정 사실을 증명한 경

実を証明した場合に限り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有価証券を目的とする質権以外の質権については、その証明は、次に掲げる書類によ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公正証書

二 登記所又は公証人役場において日付のある 印章が押されている私署証書

三 郵便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五号) 第四十八条第一項(内容証明)の規定により 内容証明を受けた証書

四 民法施行法(明治三十一年法律第十一号)第七条第一項(公証人法の規定の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公証人法(明治四十一年法律第五十三号)第六十二条ノ七第四項(書面の交付による情報の提供)の規定により交付を受けた書面

3 前項各号の規定により証明された質権は、 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民法施行法 第五条(確定日付がある証書)の規定により 確定日付があるものとされた日に設定された 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質権を有する者は、第二項の証明 をしなかつたため国税におくれる金額の範囲 内において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国税に優 先する後順位の質権者に対して優先権を行う ことができない。

第十六条(法定納期限等以前に設定された抵 当権の優先)

納税者が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にその財産 上に抵当権を設定しているときは、その国税 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이외의 질권에 대해서 그 증명은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로 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

2.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 일자가 있는 인장이 찍혀 있는 사서증서

3. 「우편법」(1947년 법률 제165호) 제48 조제1항(내용증명)의 규정에 따라 내용증명 을 받은 증서

4. 「민법시행법」(1898년 법률 제11호) 제 7조제1항(「공증인법」의 규정 준용)에서 준용하는 「공증인법」(1908년 법률 제53 호) 제62조의7제4항(서면 교부에 의한 정보 의 제공)의 규정에 따라 교부를 받은 서면

③ 전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증명된 질권은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민법시행법」 제5조(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된 날에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질권을 가진 자는 제2항의 증명을 하지 않아 국세에 후순위가 된 금액의범위 내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에우선하는 후순위 질권자에 대해 우선권을행사할 수 없다.

제16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된 저당 권의 우선)

납세자가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재 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국세는 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抵当権により 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第十七条(譲受前に設定された質権又は抵当 権の優先)

納税者が質権又は抵当権の設定されている財産を譲り受けたときは、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質権又は抵当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2 前項の規定は、登記をすることができる質権以外の質権については、その質権者が、強制換価手続において、その執行機関に対し、同項の譲受前にその質権が設定されている事実を証明した場合に限り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十五条第二項後段及び第三項(優先質権の証明)の規定を準用する。

第十八条(質権及び抵当権の優先額の限度 等)

前三条の規定に基き国税に先だつ質権又は抵 当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の元本の金額は、 その質権者又は抵当権者がその国税に係る差 押又は交付要求の通知を受けた時における債 権額を限度とする。ただし、その国税に優先 する他の債権を有する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 と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質権又は抵当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額又は極度額を増加する登記がされた場合には、その登記がされた時において、その増加した債権額又は極度額につき新たに質権又は抵当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して、前三条の規定を適用する。

환가대금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7조(양수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의 우선)

① 납세자가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수했을 때에는 국세는 환가 대금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질권이외의 질권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강제환가절차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같은 항의 양수전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우선질권의 증명)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질권 및 저당권의 우선액의 한도 등)

① 전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원 본의 금액은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국세 와 관련된 압류 또는 교부요구 통지를 받았 을 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국세 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액 또는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기가 된 경우 에는 그 등기가 되었을 때에 증가된 채권액 또는 한도액에 대해 새로 질권 또는 저당권 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 전3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

第十九条(不動産保存の先取特権等の優先)

次に掲げる先取特権が納税者の財産上にある ときは、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 先取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 する。

- 一 不動産保存の先取特権
- 二 不動産工事の先取特権

三 立木の先取特権に関する法律(明治四十三年法律第五十六号)第一項(立木の先取特権)の先取特権

四 商法 (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 第八百二条 (積荷等についての先取特権) 若しくは第八百四十二条 (船舶先取特権)、船舶の所有者等の責任の制限に関する法律 (昭和五十年法律第九十四号) 第九十五条第一項 (船舶先取特権) 又は船舶油濁損害賠償保障法 (昭和五十年法律第九十五号) 第四十条第一項 (船舶先取特権) の先取特権

五 国税に優先する債権のため又は国税のため に動産を保存した者の先取特権

2 前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同項第三号に 掲げる先取特権で登記をしたものを除く。) の規定は、その先取特権者が、強制換価手続 において、その執行機関に対しその先取特権 がある事実を証明した場合に限り適用する。

第二十条(法定納期限等以前にある不動産賃 貸の先取特権等の優先)

次に掲げる先取特権が納税者の財産上に国税 の法定納期限等以前からあるとき、又は納税 者がその先取特権のある財産を譲り受けたと

제19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

- ① 다음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이 납세자의 재산상에 있을 때에는 국세는 그 환가대금 에 대해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 음으로 징수한다.
- 1. 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 2. 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
- 3. 「입목의 선취득권에 관한 법률」(1910년 법률 제56호) 제1항(입목의 선취특권)의 선취특권
- 4. 「상법」(1899년 법률 제48호) 제802조 (적하 등에 대한 선취특권) 또는 제842조 (선박선취특권),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 제95조제1항(선박선취특권) 또는 「선박유 탁손해배상보장법」(1975년 법률 제95호) 제40조제1항(선박선취특권)의 선취특권
- 5.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위하여 또는 국세를 위하여 동산을 보존한 자의 선취특권
- ② 전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3호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으로서 등기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선취특권자가 강제환가절차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선취특권이 있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0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있는 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

① 다음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이 납세자의 재산상에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이전부터 있을 때나 납세자가 선취특권이 있는 재산 きは、その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 の先取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一 不動産賃貸の先取特権その他質権と同一の順位又はこれらに優先する順位の動産に関する特別の先取特権(前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先取特権を除く。)

二 不動産売買の先取特権

三 借地借家法 (平成三年法律第九十号) 第十二条 (借地権設定者の先取特権) 又は接収不動産に関する借地借家臨時処理法 (昭和三十一年法律第百三十八号) 第七条 (賃貸人等の先取特権) に規定する先取特権

四 登記をした一般の先取特権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 先取特権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一条(留置権の優先)

留置権が納税者の財産上に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財産を滞納処分により換価したときは、その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留置権により担保されていた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債権は、質権、抵当権、先取特権又は第二十三条第一項(法定納期限等以前にされた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の優先)に規定する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先立つて配当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その留置権者が、滞納処分の手続において、その行政機関等に対し、そ

을 양수했을 때에는 국세는 환가대금에 대해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1. 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그 밖에 질권과 동일한 순위 또는 이들에 우선하는 순위의 동산에 관한 특별 선취특권(전조 제1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하는 선취특권을 제외한다)

2. 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

3. 「차지차가법」(1991년 법률 제90호) 제 12조(차지권 설정자의 선취특권) 또는 「징 발부동산에 관한 차지차가 임시처리법」 (1956년 법률 제138호) 제7조(임대인 등의 선취특권)에서 규정하는 선취특권

4. 등기를 한 일반 선취특권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유치권의 우선)

① 유치권이 납세자의 재산상에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체납처분에 따라 환가했을 때에 는 국세는 환가대금에 대해 유치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정수한다. 이 경 우, 그 채권은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또는 제23조제1항(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 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에 서 규정하는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의해 담 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치권자가 체납처분 절차에서 행정기관 등에 대해 유치권이 있는

の留置権がある事実を証明した場合に限り適用する。

第二十二条(担保権付財産が譲渡された場合の国税の徴収)

納税者が他に国税に充てるべき十分な財産が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国税の法定納期限等後に登記した質権又は抵当権を設定した財産を譲渡したときは、納税者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国税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に限り、その国権者又は抵当権者から、これらの者がその譲渡に係る財産の強制換価手続において、その質権又は抵当権によつて担保される債権につき配当を受けるべき金額のうちから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金額は、第一号に掲げる金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金額を控除した額をこえ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前項の譲渡に係る財産の換価代金から同項 に規定する債権が配当を受けるべき金額
- 二 前号の財産を納税者の財産とみなし、その 財産の換価代金につき前項の国税の交付要求 があつたものとした場合に同項の債権が配当 を受けるべき金額
- 3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国税を徴収するため、同項の質権者又は抵当権者に代位してその質権又は抵当権を実行することができる。
- 4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国税を徴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2조(담보권부 재산이 양도된 경우 국세의 징수)

① 납세자가 국세에 충당할 충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자가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후에 등기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국세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국세는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부터 그 자가 양도와 관련된 재산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 배당을 받을 금액 중에서 징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에 열거하는 금액에서 제2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할 수없다.
- 1. 전항의 양도와 관련된 재산의 환가대금에 서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이 배당받을 금액
- 2. 전호의 재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해 전항의 국세 교부 요구가 있은 것으로 한 경우에 같은 항의 채권이 배당받을 금액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항의 질권자 또는 저 당권자를 대위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실 행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収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旨を質権者又は 抵当権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税務署長は、第一項の譲渡に係る財産につき強制換価手続が行われた場合には、同項の規定により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金額の国税につき、執行機関に対し、交付要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節 国税と仮登記又は譲渡担保に係 る債権との調整

第二十三条(法定納期限等以前にされた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の優先等)

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に納税者の財産につき、その者を登記義務者(登録義務者を含む。)として、仮登記担保契約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三年法律第七十八号)第一条(趣旨)に規定する仮登記担保契約に基づく仮登記又は仮登録(以下「担保のための仮登記」という。)が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国税は、その換価代金につき、その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2 担保のための仮登記がされている納税者の 財産上に、第十九条第一項各号(不動産保存 の先取特権等の優先)に掲げる先取特権があ るとき、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から第二十 条第一項各号(法定納期限等以前にある不動 産賃貸の先取特権等の優先)に掲げる先取特 権があるとき、又は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 に質権若しくは抵当権が設定され、若しくは 担保のための仮登記がされているときは、そ の国税は、仮登記担保契約に関する法律第三 条第一項(清算金)(同法第二十条(土地等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국세에 대해 집행기관에 교부요구를할 수 있다.

제4절 국세와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채권과의 조정

제23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 등)

①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그 자를 등기의무자(등록의무자를 포함한다)로 하여 「가등기담보계약에관한 법률」(1978년 법률 제78호) 제1조(취지)에서 규정하는 가등기담보계약에 기초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하 "담보를 위한가등기"라 한다)이 되어 있을 때에는 국세는환가대금에 대해 담보를 위한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②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납세자의 재산상에 제19조제1항 각 호(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이 있을 때,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이전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법정납부기한 등이전에 있는 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등의우선)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이 있을 때, 또는국세 법정납부기한 등이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국세는 「가등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청산

の所有権以外の権利を目的とする契約への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清算金に係る換価代金につき、同法第四条第一項(物上代位)(同法第二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権利が行使されたこれらの先取特権、質権及び抵当権並びに同法第四条第二項(同法第二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権利が行使された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後順位の担保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3 第十七条第一項(譲受前に設定された質権 又は抵当権の優先)の規定は、納税者が担保 のための仮登記がされている財産を譲り受け たときについて、前条(第三項を除く。)の 規定は、納税者が他に国税に充てるべき十分 な財産が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国 税の法定納期限等後に担保のための仮登記を した財産を譲渡したときについて、それぞれ 準用する。

4 仮登記担保契約に関する法律第一条に規定する仮登記担保契約で、消滅すべき金銭債務がその契約の時に特定されていないものに基づく仮登記及び仮登録は、国税の滞納処分においては、その効力を有しない。

第二十四条(譲渡担保権者の物的納税責任)

納税者が国税を滞納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譲渡した財産でその譲渡により担保の目的となつているもの(以下「譲渡担保財産」という。)があるときは、その者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徴収すべき国税

금)(같은 법 제20조(토지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준용)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 는 청산금과 관련된 환가대금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제1항(물상대위)(같은 법 제20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라 권리가 행사된 이들 선취특권, 질권과 저 당권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같은 법 제20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 용하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행사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순위의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한다.

③ 제17조제1항(양수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우선)의 규정은 납세자가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양수했을 때에 대하여 준용하고, 전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납세자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 자가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후에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한 재산을 양도했을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가등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가등기담보계약으로서 소멸할 금전채무가 계약 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초한 가등기 및 가등록은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제24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①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서 양도에 의해 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하 "양도담보재산"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に限り、譲渡担 保財産から納税者の国税を徴収することがで きる。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徴収しようとするときは、譲渡担保財産の権利者(以下「譲渡担保権者」という。)に対し、徴収しようとする金額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書面により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住所又は居所(事務所及び事業所を含む。以下同じ。)の所在地を所轄する税務署長及び納税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告知書を発した日から十日を経過した日までにその徴収しようとする金額が完納されていないときは、徴収職員は、譲渡担保権者を第二次納税義務者とみなして、その譲渡担保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十二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第二次納税義務の通則)及び第九十条第三項(換価の制限)の規定を準用する。

4 譲渡担保財産を第一項の納税者の財産としてした差押えは、同項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前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として滞納処分を続行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税務署長は、遅滞なく、第二項の告知及び通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を 続行する場合において、譲渡担保財産が次の 各号に掲げる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各号に 定める者に対し、納税者の財産としてした差 押えを第三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として滞納 処分を続行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 국세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양 도담보재산에서 납세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하려는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려는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또는 거소(사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징수하려는 금액이 완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징수 직원은 양도담보권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차 납세 의무의 통칙) 및 제90조제3항(환가의 제한)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양도담보재산을 제1항의 납세자의 재산으로서 한 압류는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로서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고지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일 때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납세자의 재산으로서한 압류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로서 체납처분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61

一 第三者が占有する動産(第七十条(船舶又は航空機の差押え)又は第七十一条(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の差押え)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財産及び無記名債権を除く。以下同じ。)又は有価証券 動産又は有価証券 を占有する第三者

二 第六十二条 (差押えの手続及び効力発生時期) 又は第七十三条 (電話加入権等の差押えの手続及び効力発生時期) 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財産 (これらの財産の権利の移転につき登記を要するものを除く。) 第三債務者又はこれに準ずる者 (以下「第三債務者等」という。)

6 税務署長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 を続行する場合において、第五十五条第一号 又は第三号(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えの通 知)に掲げる者のうち知れている者があると きは、これらの者に対し、納税者の財産とし てした差押えを第三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と して滞納処分を続行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7 第二項の規定による告知又は第四項の規定 の適用を受ける差押えをした後、納税者の財 産の譲渡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が債務不履行 その他弁済以外の理由により消滅した場合 (譲渡担保財産につき買戻し、再売買の予約 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契約を締結している場 合において、期限の経過その他その契約の履 行以外の理由によりその契約が効力を失つた ときを含む。)においても、なお譲渡担保財 産として存続するものとみなして、第三項の 한다.

1.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제7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 또는 제71조(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산 및 무기명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가증권: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제3자

2. 제62조(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또는 제73조(전화가입권 등의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산 (이들 재산의 권리 이전에 대해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3채무자 또 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 등"이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경우, 제55조제1호 또는 제3호(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열거하는 자 중 알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자에게 납세자의 재산으로서 한 압류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로서 체납처분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압류를 한 후, 납세자의 재산의 양도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 또는 그 밖에 변제 이외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양도담보재산에 대해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 및 그 밖에 계약의이행 이외의 이유로 인해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을

規定を適用する。

8 第一項の規定は、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に、担保の目的でされた譲渡に係る権利の移転の登記がある場合又は譲渡担保権者が国税の法定納期限等以前に譲渡担保財産となつている事実を、その財産の売却決定の前日までに、証明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十五条第二項後段及び第三項(優先質権の証明)の規定を準用する。

9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譲渡担保権者は、第十章(罰則)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納税者とみなす。

第二十五条 (譲渡担保財産の換価の特例等)

買戻しの特約のある売買の登記、再売買の予約の請求権の保全のための仮登記(仮登録を含む。以下同じ。)その他これに類する登記(以下この条において「買戻権の登記等」という。)がされている譲渡担保財産でその買戻権の登記等の権利者が滞納者であるときは、その差し押さえた買戻権の登記等に係る権利及び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差し押さえたの買戻権の登記等のある譲渡担保財産を一括して換価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条及び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譲渡 担保財産からする納税者の国税の徴収に関し 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五節 国税及び地方税等と私債権との 競合の調整

第二十六条(国税及び地方税等と私債権との

적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은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이전에 담보의 목적으로 행해진 양도와 관련된 권리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또는 양도 담보권자가 국세 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양도담보재산이 된 사실을 그 재산의 매각결정 전날까지 증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후단 및제3항(우선질권의 증명)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담보권자는 제10장(벌칙)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납세자로 본다.

제25조(양도담보재산의 환가의 특례 등)

①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의 등기, 재매매의 예약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기(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의 등기 등"이라 한다)가 되어 있는 양도담보재산으로서 환매권의 등기 등의 권리자가 체납자일 때에는 압류한 환매권의 등기 등과 관련된 권리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환매권의 등기 등이 있는 양도담보재산을 일괄하여 환가할 수 있다.

② 전조 및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양 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납세자의 국 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절 국세 및 지방세 등과 사채권과 의 경합 조정

제26조(국세 및 지방세 등과 사채권과의 경

競合の調整)

強制換価手続において国税が他の国税、地方 税又は公課(以下この条において「地方税 等」という。)及びその他の債権(以下この 条において「私債権」という。)と競合する 場合において、この章又は地方税法その他の 法律の規定により、国税が地方税等に先だ ち、私債権がその地方税等におくれ、かつ、 当該国税に先だつとき、又は国税が地方税等 におくれ、私債権がその地方税等に先だち、 かつ、当該国税におくれるときは、換価代金 の配当については、次に定めるところによ る。

一 第九条(強制換価手続の費用の優先)若しくは第十条(直接の滞納処分費の優先)に規定する費用若しくは滞納処分費、第十一条(強制換価の場合の消費税等の優先)に規定する国税(地方税法の規定によりこれに相当する優先権を有する地方税を含む。)、第二十一条(留置権の優先)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債権、第五十九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前払賃料の優先)(第七十一条第四項(自動車等についての準用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債権又は第十九条(不動産保存の先取特権等の優先)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債権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順序に従い、それぞれこれらに充てる。

二 国税及び地方税等並びに私債権(前号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ものを除く。)につき、法定納期限等(地方税又は公課のこれに相当する納期限等を含む。)又は設定、登記、譲渡若しくは成立の時期の古いものからそれぞれ順次にこの章又は地方税法その他の法律の規

합 조정)

①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가 다른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채권(이하 이 조에서 "사채권"이라 한다)과 경합하는 경우, 이장 또는 「지방세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따라 국세가 지방세 등에 우선하고 사채권이 지방세 등에 후순위가 되며, 해당 국세에우선할 때 또는 국세가 지방세 등에 후순위가 되고 사채권이 지방세 등에 우선하며, 해당 국세에 후순위가 될 때에는 환가대금의배당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조(강제환가절차 비용의 우선) 또는 제1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에서 규정하는 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제11조(강제환가의 경우 소비세 등의 우선)에서 규정하는 국세(「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우선권이 있는 지방세를 포함한다), 제21조(유치권의 우선)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선불 임대료의 우선)(제71조제4항(자동차 등에 대한 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또는 제19조(부동산보존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순서에 따라 각각 그 채권에 충당한다.

2. 국세 및 지방세 등과 사채권(전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등(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그것에 해당하는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다)이나 설정, 등기, 양도 또는 성립의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각각 순서대로 이 장 또는 「지방세법」,

定を適用して国税及び地方税等並びに私債権 に充てるべき金額の総額をそれぞれ定める。

三 前号の規定により定めた国税及び地方税等に充てるべき金額の総額を第八条(国税優先の原則)若しくは第十二条から第十四条まで(差押先着手による国税の優先等)の規定又は地方税法その他の法律のこれらに相当する規定により、順次国税及び地方税等に充てる。

四 第二号の規定により定めた私債権に充てるべき金額の総額を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順次私債権に充てる。

第三章 第二次納税義務

第二十七条 削除

第二十八条 削除

第二十九条 削除

第三十条 削除

第三十一条 削除

第三十二条(第二次納税義務の通則)

税務署長は、納税者の国税を第二次納税義務者から徴収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徴収しようとする金額、納付の期限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納付通知書により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の住所又は居所の所在地を所轄する税務署長に対し

그 밖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 및 지 방세 등과 사채권에 충당해야 할 금액의 총 액을 각각 정한다.

3. 전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국세 및 지방세 등에 충당해야 할 금액의 총액을 제8조(국 세 우선의 원칙) 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압류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등)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그 밖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순서대로 국세 및 지방세등에 충당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사채권에 충당해야 할 금액의 총액을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순서대로 사채권에 충당한다.

제3장 제2차 납세의무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제2차 납세의무의 통칙)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자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려는 금액,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二次納税義務者がその国税を前項の納付の期限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は、税務署長は、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繰上請求)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場合を除き、納付催告書によりその納付を督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納付催告書は、国税に関する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き、その納付の期限から五十日以内に発するものとする。
- 3 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 同法第四章第一節(納税の猶予)並びに同法 第五十五条(納付委託)の規定は、第一項の 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4 第二次納税義務者の財産の換価は、その財産の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を除き、第一項の納税者の財産を換価に付した後でなければ、行うことができない。
- 5 この章の規定は、第二次納税義務者から第 一項の納税者に対してする求償権の行使を妨 げない。

第三十三条(合名会社等の社員の第二次納税 義務)

合名会社若しくは合資会社又は税理士法人、 弁護士法人、外国法事務弁護士法人、監査法 人、特許業務法人、司法書士法人、行政書士 法人、社会保険労務士法人若しくは土地家屋 調査士法人が国税を滞納した場合において、 そ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 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は、その社員(合資会社及び監査法人にあつ 야 한다.

-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전항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국세통칙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조기납부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최고서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납부최고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납부기한부터 50일 이내에 발부한다.
- ③ 「국세통칙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제4장제1절(납세유예) 및 같은 법 제55조(납부위탁)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④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의 환가는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1항의 납세자의 재산을 환가에붙인 후에만 할 수 있다.
- ⑤ 이 장의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1 항의 납세자에 대해 하는 구상권 행사를 방 해하지 않는다.

제33조(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제2차 납세의 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세무사법인, 변호 사법인, 외국법사무변호사법인, 감사법인, 특 허업무법인, 법무사법인, 행정사법인, 사회보 혐노무사법인 또는 토지가옥조사법인이 국 세를 체납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원(합자회사 및 감 사법인은 무한책임사원)은 체납과 관련된 ては、無限責任社員)は、その滞納に係る国 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この場合におい て、その社員は、連帯してその責めに任ず る。

第三十四条(清算人等の第二次納税義務)

法人が解散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法人に課されるべき、又はその法人が納付すべき国税を納付しないで残余財産の分配又は引渡しをしたときは、その法人に対し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り、清算人及び残余財産の分配又は引渡しを受けた者(前条の規定の面間と。)は、その滞納に係る国税につき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ただし、清算人は分配又は引渡しを受けた者はそので、ただりでは引渡しを受けた者はその受けた財産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それぞれその責めに任ずる。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 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4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해야 하거나 또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인 및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전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체납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를 한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잔여재산의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각각 책임을 진다.

② 「신탁법」(2006년 법률 제108호) 제 175조(청산의 개시 원인)에서 규정하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과 관련된 청산수탁자(같은 법 제177조(청산수탁자의 직무)에서 규정하는 청산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부과해야 하거나 청산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납부할 의무가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같은 법 제2조제9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를말한다)가 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잔여재산수익자 등(같은 법 제182조제2항(잔여재산의 귀속)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수익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급부를 했을 때에는 청산수탁

託者に対し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限り、清算受託者(信託財産に属する財産のみをもつて当該国税を納める義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清算受託者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定清算受託者」という。)及び残余財産受益者等は、その滞納に係る国税につき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ただし、特定清算受託者は給付をした財産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残余財産受益者等は給付を受けた財産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それぞれその責めに任ずる。

第三十五条 (同族会社の第二次納税義務)

滞納者がその者を判定の基礎となる株主又は 社員として選定した場合に法人税法 (昭和四 十年法律第三十四号) 第二条第十号(同族会 社の定義) に規定する会社に該当する会社 (以下「同族会社」という。) の株式又は出 資を有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株式又は出資 につき次に掲げる理由があり、かつ、その者 の財産(当該株式又は出資を除く。) につき 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徴収すべき国税に 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有する当 該株式又は出資(当該滞納に係る国税の法定 納期限(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国税 の還付金の額に相当する税額を減少させる修 正申告又は更正により納付すべき国税並びに 当該国税に係る附帯税及び滞納処分費につい ては、その還付の基因となつた申告、更正又 は決定があつた日とし、過怠税については、 その納税義務の成立の日とする。以下この章 において同じ。)の一年以上前に取得したも のを除く。)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当該会 社は、その滞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

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수탁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만 해당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닌 청산수탁자에게 한정한다. 이하이 항에서 "특정청산수탁자"라 한다) 및 잔여재산수익자 등은 그 체납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특정청산수탁자는 급부를 한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잔여재산수익자 등은 급부를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각각 책임을 진다.

제35조(동족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체납자가 그 자를 판정의 기초가 되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 선정한 경우에 「법인 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제2조제10호 (동족회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해 당하는 회사(이하 "동족회사"라 한다)의 주 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 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가 있고, 그 자의 재산(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한 다)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국세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유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해당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액수에 해당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 또는 경 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해당 국세와 관련된 부대세와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환 급의 원인이 된 신고, 경정 또는 결정이 있 은 날로 하고, 과태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의 성립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년 이상 전에 취득한 것을 제외한다)의 가 액의 한도에서 해당 회사는 체납과 관련된

を負う。

- 一 その株式又は出資を再度換価に付してもな お買受人がないこと。
- 二 その株式若しくは出資の譲渡につき法律若 しくは定款に制限があり、又は株券の発行が ないため、これらを譲渡することにつき支障 があること。
- 2 前項の同族会社の株式又は出資の価額は、 第三十二条第一項(第二次納税義務者への告 知)の納付通知書を発する時における当該会 社の資産の総額から負債の総額を控除した額 をその株式又は出資の数で除した額を基礎と して計算した額による。
- 3 第一項の同族会社であるかどうかの判定は、第三十二条第一項の納付通知書を発する時の現況による。

第三十六条(実質課税額等の第二次納税義 務)

滞納者の次の各号に掲げる国税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第一号に定める者にあつては同号に規定する収益が生じた財産(その財産の異動により取得した財産(以下これらの財産に基因して取得した財産(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取得財産」という。)を含む。)、第二号に定める者にあつては同号に規定する貸付けに係る財産(取得財産を含む。)、第三号に定める者にあつてはその受けた利益の額を限度として、その滞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

一 所得税法第十二条(実質所得者課税の原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1. 주식 또는 출자를 다시 환가에 붙여도 여전히 매수인이 없을 것
- 2. 주식 또는 출자의 양도에 대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주권발행이 없어서 이들을 양도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
- ② 전항의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제32조제1항(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고지)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해당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하여 이를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 나눈 액수를 기초로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동족회사인지 여부의 판정은 제 32조제1항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현 황에 따른다.

제36조(실질과세액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자의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국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이 발생한 재산(재산의 이동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취득재산"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정하는 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부와 관련된 재산(취득재산을 포함한다),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받은 이익의 액수를 한도로 체납과관련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소득세법」 제12조(실질소득자과세의

則)若しくは第百五十八条(事業所の所得の帰属の推定)又は法人税法第十一条(実質所得者課税の原則)の規定により課された国税その国税の賦課の基因となつた収益が法律上帰属するとみられる者

二 消費税法(昭和六十三年法律第百八号)第十三条(資産の譲渡等又は特定仕入れを行った者の実質判定)の規定により課された国税(同法第二条第一項第八号(定義)に規定する貸付けに係る部分に限る。)その国税の賦課の基因となつた当該貸付けを法律上行つたとみられる者

三 所得税法第百五十七条(同族会社等の行為 又は計算の否認等) 若しくは第百六十八条の 二(非居住者の恒久的施設帰属所得に係る行 為又は計算の否認)、法人税法第百三十二条 (同族会社等の行為又は計算の否認)、第百 三十二条の二 (組織再編成に係る行為又は計 算の否認)、第百三十二条の三(連結法人に 係る行為又は計算の否認) 若しくは第百四十 七条の二(外国法人の恒久的施設帰属所得に 係る行為又は計算の否認)、相続税法第六十 四条(同族会社等の行為又は計算の否認等) 又は地価税法(平成三年法律第六十九号)第 三十二条(同族会社等の行為又は計算の否認 等)の規定により課された国税 これらの規定 により否認された納税者の行為(否認された 計算の基礎となつた行為を含む。) につき利 益を受けたものとされる者

第三十七条(共同的な事業者の第二次納税義 務)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納税者の事業の遂行に 欠くことができない重要な財産を有し、か 원칙) 또는 제158조(사업소의 소득 귀속의 추정)나 「법인세법」 제11조(실질소득자과 세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국세: 국 세 부과의 원인이 된 수익이 법률상 귀속한 다고 보는 자

2. 「소비세법」(1988년 법률 제108호) 제 13조(자산의 양도 등 또는 특정매입을 한 자의 실질판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국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정의)에서 규정하는 대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국세 부과의 원인이 된 해당 대부를 법률상 행하였다고 보는 자

3. 「소득세법」 제157조(동족회사 등의 행 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또는 제168조의 2(비거주자의 항구적 시설 귀속소득과 관련 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132조(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제132조의2(조직재편성과 관련된 행 위 또는 계산의 부인), 제132조의3(연결법 인과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또는 제147조의2(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 귀속소 득과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상 속세법」 제64조(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또는 「지가세법」(1991년 법률 제69호) 제32조(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된 국세: 이들 규정에 따라 부인된 납세자의 행위(부인된 계산의 기초가 된 행위를 포함 한다)에 대해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자

제37조(공동 사업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납세자의 사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산이 있

- つ、当該財産に関して生ずる所得が納税者の 所得となつ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納税者 がその供されている事業に係る国税を滞納 し、その国税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 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 ときは、当該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財産 (取得財産を含む。)を限度として、その滞 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
- 一 納税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その他の親族でその納税者の経営する事業から所得を受けているもの
- 二 納税者がその事実のあつた時の現況において同族会社である場合 その判定の基礎となった株主又は社員

第三十八条(事業を譲り受けた特殊関係者の 第二次納税義務)

納税者が生計を一にする親族その他納税者と 特殊な関係のある個人又は被支配会社(当該 納税者を判定の基礎となる株主又は社員とし て選定した場合に法人税法第六十七条第二項 (特定同族会社の特別税率)に規定する会社 に該当する会社をいい、これに類する法人を 含む。) 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事業を譲渡 し、かつ、その譲受人が同一又は類似の事業 を営んで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納税者が当 該事業に係る国税を滞納し、その国税につき 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徴収すべき額 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譲受人 は、譲受財産の価額の限度において、その滞 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ただ し、その譲渡が滞納に係る国税の法定納期限 より一年以上前にされている場合は、この限

고, 해당 재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납세자의 소득으로 된 경우, 납세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각호에 열거하는 자는 해당 재산(취득재산을 포함한다)을 한도로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1.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으로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2. 납세자가 그 사실이 있었을 당시에 동족 회사인 경우: 판정의 기초가 된 주주 또는 사원

제38조(사업을 양수한 특수관계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 밖에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피 지배회사(해당 납세자를 판정의 기초가 되 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 선정한 경우에 「법 인세법 제67조제2항(특정동족회사의 특별 세율)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 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법인을 포함한다)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 고 있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양수인은 양수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양도가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보다 1년 이상 전에 이 りでない。

第三十九条(無償又は著しい低額の譲受人等 の第二次納税義務)

滞納者の国税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 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 場合において、その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こ とが、当該国税の法定納期限の一年前の日以 後に、滞納者がその財産につき行つた政令で 定める無償又は著しく低い額の対価による譲 渡(担保の目的でする譲渡を除く。)、債務 の免除その他第三者に利益を与える処分に基 因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れらの処分に より権利を取得し、又は義務を免かれた者 は、これらの処分により受けた利益が現に存 する限度 (これらの者がその処分の時にその 滞納者の親族その他滞納者と特殊な関係のあ る個人又は同族会社(これに類する法人を含 む。) で政令で定めるもの(第五十八条第一 項(第三者が占有する動産等の差押手続)及 び第百四十二条第二項第二号(捜索の権限及 び方法) において「親族その他の特殊関係 者」という。) 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処分 により受けた利益の限度)において、その滞 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

第四十条 削除

第四十一条(人格のない社団等に係る第二次 納税義務)

人格のない社団等が国税を滞納した場合において、これに属する財産(第三者が名義人となっているため、その者に法律上帰属するとみられる財産を除く。)につき滞納処分を執行してもなおその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

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의 양수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자의 국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해당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체납자가 재산에 대해 한 정령으로 정하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액수의 대가 에 의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를 제외한다), 채무면제, 그 밖에 제3자에게 이 익을 주는 처분에 기인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러한 처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제받은 그 받은 이익이 실제 존재 하는 한도(이러한 자가 처분 시에 체납자의 친족, 그 밖에 체납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동족회사(이와 유사한 법인을 포 함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제58조제1 항(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등의 압류절차) 및 제142조제2항제2호(수색의 권한 및 방 법)에서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자"라 한 다)일 때에는 이러한 처분에 따라 받은 이 익의 한도)에서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0조 삭제

제41조(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이에 속하는 재산(제3자가 명의인으로 되어 있어 그 자에게 법률상 귀속한다고 보는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第三者は、その法律 上帰属するとみられる財産を限度として、そ の滞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う。

2 滞納者である人格のない社団等の財産の払 戻又は分配をした場合(第三十四条(清算人 等の第二次納税義務)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 合を除く。)において、当該社団等(前項に 規定する第三者を含む。)につき滞納処分を 執行してもなお徴収すべき額に不足すると認 められるときは、当該払戻又は分配を受けた 者は、その受け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 その滞納に係る国税の第二次納税義務を負 う。ただし、その払戻又は分配が滞納に係る 国税の法定納期限より一年以上前にされ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章 削除

第四十二条 削除

第四十三条 削除

第四十四条 削除

第四十五条 削除

第四十六条 削除

第五章 滯納処分

第一節 財産の差押

第一款 通則

第四十七条 (差押の要件)

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徴収職員 は、滞納者の国税につきその財産を差し押え 인정될 때에는 제3자는 법률상 귀속한다고 보는 재산을 한도로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체납자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재산의 환급 또는 분배를 한 경우(제34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사단 등(전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체납처 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금액에 부 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환급 또는 분 배를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 다만, 환급 또는 분배가 체납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보다 1년 이상 전에 이 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재산의 압류 제1관 통칙

제47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 수 직원은 체납자의 국세에 대해 재산을 압

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滞納者が督促を受け、その督促に係る国税 をその督促状を発した日から起算して十日を 経過した日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
- 二 納税者が国税通則法第三十七条第一項各号 (督促)に掲げる国税をその納期限(繰上請求がされた国税については、当該請求に係る 期限)までに完納しないとき。
- 2 国税の納期限後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十日 を経過した日までに、督促を受けた滞納者に つき国税通則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繰上 請求)の一に該当する事実が生じたときは、 徴収職員は、直ちにその財産を差し押えるこ とができる。
- 3 第二次納税義務者又は保証人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を適用する場合には、同項中「督促 状」とあるのは、「納付催告書」とする。

第四十八条(超過差押及び無益な差押の禁止)

国税を徴収するために必要な財産以外の財産は、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

2 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る財産の価額がその 差押に係る滞納処分費及び徴収すべき国税に 先だつ他の国税、地方税その他の債権の金額 の合計額をこえる見込がないときは、その財 産は、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十九条(差押財産の選択に当つての第三 者の権利の尊重)

徴収職員は、滞納者(譲渡担保権者を含む。 第七十五条、第七十六条及び第七十八条(差 류하여야 한다.

- 1.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과 관련된 국 세를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기산하여 10 일이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 2. 납세자가 「국세통칙법」 제37조제1항 각 호(독촉)에 열거하는 국세를 납부기한 (조기납부청구가 된 국세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와 관련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 ② 국세의 납부기한 후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독촉을 받은 체납자에게 「국세통칙법」 제38조제1항 각호(조기납부청구)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 직원은 즉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③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중 "독촉장"은 "납부최고서"로 한다.

제48조(초과압류 및 무익한 압류의 금지)

- ①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②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처분비 및 징수할 국세에 우선 하는 다른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 금액 의 합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49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존중)

징수 직원은 체납자(양도담보권자를 포함한다. 제75조, 제76조 및 제78조(압류금지 재

押禁止財産)を除き、以下同じ。)の財産を 差し押えるに当つては、滞納処分の執行に支 障がない限り、その財産につき第三者が有す る権利を害さない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五十条(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る 財産の差押換)

質権、抵当権、先取特権(第十九条第一項各 号(不動産保存の先取特権等)又は第二十条 第一項各号(不動産賃貸の先取特権等)に掲 げる先取特権に限る。この項を除き、以下同 じ。)、留置権、賃借権その他第三者の権利 (これらの先取特権以外の先取特権を除く。 以下同じ。)の目的となつている財産が差し 押えられた場合には、その第三者は、税務署 長に対し、滞納者が他に換価の容易な財産で 他の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ないもの を有し、かつ、その財産によりその滞納者の 国税の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理 由として、その財産の公売公告の日(随意契 約による売却をする場合には、その売却の 日)までに、その差押換を請求することがで きる。

2 税務署長は、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 差押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その 請求を相当と認めないときは、その旨をその 第三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通知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を受けた第三者が、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した日までに、第一項の規定により差し押えるべきことを請求した財産の換価をすべきことを申し立てたとき

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에 대해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변경)

①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제19조제1항 각호(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등) 또는 제20조제1항 각호(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등)에 열거하는 선취특권에 한정한다.이 항을제외하고 이하 같다), 유치권, 임차권, 그밖에 제3자의 권리(이들 선취특권 이외의 선취특권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목적으로되어 있는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자가 다른 환가가 용이한재산으로서 다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재산으로 체납자의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재산의 공매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일)까지 압류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변경 을 하여야 하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 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제3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것을 청구한 재산의 환가를 할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 재산이 환가하기 현저

は、その財産が換価の著しく困難なものであり、又は他の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るものであるときを除き、これを差し押え、かつ、換価に付した後でなければ、同項に規定する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る財産を換価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税務署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 申立があつた日から二月以内にその申立に係 る財産を差し押え、かつ、換価に付さないと きは、第一項に規定する第三者の権利の目的 となつている財産の差押を解除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ただし、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で 換価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ものの 適用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第二項又は前項の差押は、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で新たに滞納処分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ものにかかわらず、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一条(相続があつた場合の差押)

徴収職員は、被相続人の国税につきその相続 人の財産を差し押える場合には、滞納処分の 執行に支障がない限り、まず相続財産を差し 押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相続人の国税につき相続人の固有財産が 差し押えられた場合には、その相続人は、税 務署長に対し、他に換価が容易な相続財産で 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ないものを有 しており、かつ、その財産により当該国税の 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理由とし て、その差押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税務署長は、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

히 곤란하거나 다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압류하고 환가에 붙인 후에만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 같은 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에 붙이지 않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권리의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따라 환가를 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전항의 압류는,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새로 체납처분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제51조(상속이 있는 경우의 압류)

① 정수 직원은 피상속인의 국세에 대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 상속재산을 압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국세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세무서장 에게 다른 환가가 용이한 상속재산으로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재산으로 해당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압류변경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변경을

差押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その 請求を相当と認めないときは、その旨を当該 相続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は、前条第五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五十二条(果実に対する差押の効力)

差押の効力は、差し押えた財産(以下「差押財産」という。)から生ずる天然果実に及ぶ。ただし、滞納者又は第三者が差押財産の使用又は収益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財産から生ずる天然果実(その財産の換価による権利の移転の時までに収取されない天然果実を除く。)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差押の効力は、差押財産から生ずる法定果 実に及ばない。ただし、債権を差し押えた場 合における差押後の利息については、この限 りでない。

第五十二条の二(担保のための仮登記がある 財産に対する差押えの効力)

仮登記担保契約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強制 競売等の場合の担保仮登記)(同法第二十条 (土地等の所有権以外の権利を目的とする契 約への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は、担保のための仮登記がある 財産が差し押さえら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五条中「そ の決定」とあるのは「その差押え」と、「申 立てに基づく」とあるのは「ものである」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十三条(保険に付されている財産に対する差押えの効力)

하여야 하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속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재산(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재산에서 발생하는 천연과실(재산의 환가에의한 권리 이전 시까지 수확되지 않는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발생하는 법정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 2(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가등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강제경매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같은 법제20조(토지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담보를 위한가등기가 있는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제15조 중"그 결정"은 "그 압류"로, "신청에 의한"은 "것인"으로 본다.

제53조(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差押財産が損害保険に付され、又は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十一号)第九条の七の二第一項(火災共済事業)の規定による共済その他法律の規定による共済でこれに類するものの目的となつているときは、その差押えの効力は、保険金又は共済金の支払を受ける権利に及ぶ。ただし、財産を差し押さえた旨を保険者又は共済事業者に通知しなければ、その差押えをもつてこれらの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徴収職員が差押に係る前項の保険金又は共済金の支払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財産がその保険又は共済に係る事故が生じた時に先取特権、質権又は抵当権の目的となつていたときは、その先取特権者、質権者又は抵当権者は、民法第三百四条第一項ただし書(先取特権の物上代位)その他これらの権利の行使のためその保険金又は共済金の支払を受ける権利をその支払前に差し押えることを必要とする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その支払前にその差押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四条 (差押調書)

徴収職員は、滞納者の財産を差し押さえたときは、差押調書を作成し、その財産が次に掲げる財産であるときは、その謄本を滞納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動産又は有価証券

- 二 債権(電話加入権、賃借権、第七十三条の 二(振替社債等の差押え)の規定の適用を受 ける財産その他取り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債 権を除く。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 三 第七十三条 (電話加入権等の差押え) 又は

① 압류재산이 손해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 제9조의7의2제1항(화재공제사업)의 규정에 따른 공제,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공제로서 이와 유사한 것의 목적으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미친다. 다만,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압류로써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정수 직원이 압류와 관련된 전항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재산이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선취특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는 선취특권자, 질권자또는 저당권자는 「민법」 제304조제1항 단서(선취특권의 물상대위), 그 밖에 이들 권리의 행사를 위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급 전에 압류할 필요가 있는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 압류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압류조서)

징수 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그 재산이 다음에 열거하는 재산일 때에는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 2. 채권(전화가입권, 임차권, 제73조의2(대체사채 등의 압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산, 그 밖에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3. 제73조(전화가입권 등의 압류) 또는 제

第七十三条の二(振替社債等の差押え)の規 定の適用を受ける財産

第五十五条(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えの通 知)

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を差し押さえたときは、税務署長は、当該各号に掲げる者のうち知れている者に対し、その旨その他必要な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質権、抵当権、先取特権、留置権、賃借権 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担保のための仮登記 に係る権利を除く。)の目的となつている財 産 これらの権利を有する者
- 二 仮登記がある財産 仮登記の権利者
- 三 仮差押え又は仮処分がされている財産 仮 差押え又は仮処分をした保全執行裁判所又は 執行官

第二款 動産又は有価証券の差押

第五十六条(差押の手続及び効力発生時期 等)

動産又は有価証券の差押は、徴収職員がその 財産を占有して行う。

- 2 前項の差押の効力は、徴収職員がその財産を占有した時に生ずる。
- 3 徴収職員が金銭を差し押えたときは、その 限度において、滞納者から差押に係る国税を 徴収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七条(有価証券に係る債権の取立)

有価証券を差し押えたときは、徴収職員は、

73조의2(대체사채 등의 압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산

제55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자 중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사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유치권, 임차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
- 2. 가등기가 있는 재산: 가등기 권리자
- 3.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재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보전집행법원 또 는 집행관

제2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제56조(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등)

-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징수 직원이 그 재산을 점유하여 실시한다.
- ② 전항의 압류 효력은 징수 직원이 재산을 점유했을 때에 발생한다.
- ③ 징수 직원이 금전을 압류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압류와 관련된 국세 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의 추심)

① 유가증권을 압류했을 때에는 징수 직원

その有価証券に係る金銭債権の取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徴収職員が前項の規定により金銭を取り立てたときは、その限度において、滞納者から 差押に係る国税を徴収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八条(第三者が占有する動産等の差押 手続)

滞納者の動産又は有価証券でその親族その他の特殊関係者以外の第三者が占有しているものは、その第三者が引渡を拒むときは、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動産又は有価証券があ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第三者がその引渡を拒むときは、 滞納者が他に換価が容易であり、かつ、その 滞納に係る国税の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 る財産を有し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に限り、 税務署長は、同項の第三者に対し、期限を指 定して、当該動産又は有価証券を徴収職員に 引き渡すべきことを書面により命ずることが 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命令をした 税務署長は、その旨を滞納者に通知しなけれ ばならない。

3 前項の命令に係る動産若しくは有価証券が 徴収職員に引き渡されたとき、又は同項の命 令を受けた第三者が指定された期限までに徴 収職員にその引渡をしないときは、徴収職員 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動産又 は有価証券を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九条(引渡命令を受けた第三者等の権 利の保護)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動産の引渡を命ぜら

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정수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징수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압류와 관련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체납자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친 족 및 그 밖에 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 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제3자가 인도 를 거부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전항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같은 항의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체납자가 환가가 용이하고, 체납과 관련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은 같 은 항의 제3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징수 직원에게 인도 할 것을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한 세무서장은 그 취지를 체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명령과 관련된 동산 또는 유가증 권이 징수 직원에게 인도되었을 때나 같은 항의 명령을 받은 제3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 직원에게 인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징 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

제59조(인도명령을 받은 제3자 등의 권리보호)

①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인도

れた第三者が、滞納者との契約による賃借権、使用貸借権その他動産の使用又は収益をする権利に基きその命令に係る動産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をすることにより占有の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きは、その第三者は、その占有の基礎となっている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第三者は、当該契約の解除により滞納者に対して取得する損害賠償請求権については、その動産の売却代金の残余のうちから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徴収職員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動産の引渡を命ぜられた第三者の請求がある場合には、その第三者が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契約を解除したときを除き、その動産の占有の基礎となつている契約の期間内(その期限がその動産を差し押えた日から三月を経過した日より遅いときは、その日まで)は、その第三者にその使用又は収益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動産の引渡を命ぜられた第三者が賃貸借契約に基きこれ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契約を解除し、かつ、前条第二項の命令があつた時前にその後の期間分の借賃を支払つているときは、その第三者は、税務署長に対し、その動産の売却代金のうちから、その借賃に相当する金額で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差押の日後の期間に係るもの(その金額が三月分に相当する金額をこえるときは、当該金額)の配当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があつた金額は、第八条(国税優先の原則)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滞納処分に係る滞納処分費に次

를 명령받은 제3자가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임차권, 그 밖에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에 따라 그 명령과 관련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를 함으로써 점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때에는 제3자는 점유의 기초가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해당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체납자에 대해 취득할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그 동산 매각대금의 잔여분 중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정수 직원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인도를 명령받은 제3자의 청구가 있 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하고 동산 점유의 기초가 된 계약의 기간 내(그 기한 이 동산을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보다 늦을 때에는 그 날까지)에는 제3자 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인도를 명령받은 제3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조 제2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 그 후의 기간분의 차임을 지급했을 때에는 제3자는 세무서장에게 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일 후의 기간과 관련된 것(그 금액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액)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청구가 있는 금액은 제8조(국세 우선의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과관련된 체납처분비 다음 순위이고, 그 동산

ぎ、かつ、その動産上の留置権により担保されていた債権に次ぐものとして、配当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動産の引渡を拒まなかつた同項に規定する第三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十条 (差し押えた動産等の保管)

徴収職員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差 し押えた動産又は有価証券を滞納者又はその 財産を占有する第三者に保管させることがで きる。ただし、その第三者に保管させる場合 には、その運搬が困難であるときを除き、そ の者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滞納者又は第三者に保管させたときは、第五十六条第二項(動産等の差押の効力発生時期)の規定にかかわらず、封印、公示書その他差押を明白にする方法により差し押えた旨を表示した時に、差押の効力が生ずる。

第六十一条(差し押えた動産の使用収益)

徴収職員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滞納者 に差し押えた動産を保管させる場合におい て、国税の徴収上支障がないと認めるとき は、その使用又は収益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 る。

2 前項の規定は、差し押えた動産につき使用 又は収益をする権利を有する第三者にその動 産を保管させ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款 債権の差押

에 대한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로 배당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0조(압류한 동산 등의 보관)

① 정수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운반이 곤란할 때를 제외하고 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했을 때에는 제56조제2항(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인, 공시서, 그 밖에 압류를 명백히 하는 방법으로 압류한 사실을 표시했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압류한 동산의 사용수익)

① 정수 직원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한 동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국세 정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동산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동 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 한다.

제3관 채권의 압류

第六十二条(差押えの手続及び効力発生時 期)

債権(電子記録債権法第二条第一項(定義) に規定する電子記録債権(次条において「電 子記録債権」という。)を除く。以下この条 において同じ。)の差押えは、第三債務者に 対する債権差押通知書の送達により行う。

- 2 徴収職員は、債権を差し押えるときは、債務者に対しその履行を、滞納者に対し債権の取立その他の処分を禁じ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差押の効力は、債権差押通知書が第三債務者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 4 税務署長は、債権でその移転につき登録を要するものを差し押えたときは、差押の登録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二(電子記録債権の差押えの手 続及び効力発生時期)

電子記録債権の差押えは、第三債務者及び当該電子記録債権の電子記録をしている電子債権記録機関(電子記録債権法第二条第二項(定義)に規定する電子債権記録機関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する債権差押通知書の送達により行う。

2 徴収職員は、電子記録債権を差し押さえる ときは、第三債務者に対しその履行を、電子 債権記録機関に対し電子記録債権に係る電子 記録を、滞納者に対し電子記録債権の取立て その他の処分又は電子記録の請求を禁じなけ ればならない。

제62조(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 ① 채권(「전자기록채권법」 제2조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채권(다음 조에서 "전자기록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 ② 정수 직원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 자에게는 이행을, 체납자에게는 채권의 추심 및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 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 ④ 세무서장은 채권으로서 그 이전 등록이 필요한 것을 압류했을 때에는 압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 2(전자기록채권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 ① 전자기록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 및 해당 전자기록채권의 전자기록을 한 전자채권기록기관(「전자기록채권법」 제2조제2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전자채권기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 ② 정수 직원은 전자기록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는 이행을,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기록채권과 관련된 전자기록을, 체납자에게는 전자기록채권의 추심 및 그 밖의 처분 또는 전자기록의 청구를 금지하여야 한다.

3 第一項の差押えの効力は、債権差押通知書

が電子債権記録機関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 る。ただし、第三債務者に対する同項の差押 えの効力は、債権差押通知書が第三債務者に 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第六十三条 (差し押える債権の範囲)

徴収職員は、債権を差し押えるときは、その 全額を差し押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 その全額を差し押える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 きは、その一部を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四条(抵当権等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 の差押)

抵当権又は登記することができる質権若しくは先取特権によつて担保される債権を差し押えたときは、税務署長は、その債権の差押の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嘱託をした税務署長は、その抵当権若しくは質権が設定されている財産又は先取特権がある財産の権利者(第三債務者を除く。)に差し押え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五条 (債権証書の取上げ)

徴収職員は、債権の差押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債権に関する証書を取り上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五十六条第一項(動産等の差押手続)及び第五十八条(第三者が占有する動産等の差押手続)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十六条(継続的な収入に対する差押の効 力)

③ 제1항의 압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전자채권기록기관에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 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같은 항의 압 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제63조(압류할 채권의 범위)

징수 직원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전액을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액을 압류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

제64조(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 또는 등기할 수 있는 질권이나 선취 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했을 때 에는 세무서장은 채권 압류의 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나 선취특권이 있는 재산의 권 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채권증서의 몰수)

정수 직원은 채권 압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에 관한 증서를 몰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6조제1항(동산 등의 압류절차) 및 제5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등의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계속적인 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

給料若しくは年金又はこれらに類する継続収入の債権の差押の効力は、徴収すべき国税の額を限度として、差押後に収入すべき金額に及ぶ。

第六十七条(差し押えた債権の取立)

徴収職員は、差し押えた債権の取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徴収職員は、前項の規定により取り立てた ものが金銭以外のものであるときは、これを 差し押えなければならない。
- 3 徴収職員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金銭を取り立てたときは、その限度において、滞納者から差押に係る国税を徴収したものとみなす。
- 4 国税通則法第五十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納付委託)の規定は、第一項の取立をする場合において、第三債務者が徴収職員に対し、その債権の弁済の委託をしようとするときに準用する。ただし、その証券の取り立てるべき期限が差し押えた債権の弁済期後となるときは、第三債務者は、滞納者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款 不動産等の差押

第六十八条(不動産の差押の手続及び効力発 生時期)

不動産(地上権その他不動産を目的とする物権(所有権を除く。)、工場財団、鉱業権その他不動産とみなされ、又は不動産に関する規定の準用がある財産並びに鉄道財団、軌道財団及び運河財団を含む。以下同じ。)の差

급료 또는 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 효력은 징수할 국세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67조(압류한 채권의 추심)

- ① 징수 직원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② 정수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일 때에는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③ 징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추심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압류와 관련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보다.
- ④ 「국세통칙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납부위탁)의 규정은 제1항의 추심을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징수 직원에게 채권의 변제를 위탁하려는 때에 준용한다. 다만, 증권의 추심 기한이 압류한 채권의 변제기후가 될 때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68조(부동산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① 부동산(지상권, 그 밖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소유권을 제외한다), 공장재단, 광업권, 그 밖에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있는 재산 및 철도재단, 궤도재단 및 운하재단을 포함한

押は、滞納者に対する差押書の送達により行う。

- 2 前項の差押の効力は、その差押書が滞納者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 3 税務署長は、不動産を差し押えたときは、 差押の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 ない。
- 4 前項の差押の登記が差押書の送達前にされた場合には、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差押の登記がされた時に差押の効力が生ずる。
- 5 鉱業権の差押の効力は、第二項及び前項の 規定にかかわらず、差押の登録がされた時に 生ずる。

第六十九条 (差押不動産の使用収益)

滞納者は、差し押えられた不動産につき、通常の用法に従い、使用又は収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税務署長は、不動産の価値が著しく減耗する行為がされると認められるときに限り、その使用又は収益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差し押えられた不動産につき使用又は収益をする権利を有する第三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七十条(船舶又は航空機の差押え)

登記される船舶(以下「船舶」という。)又は航空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三十一号)の規定により登録を受けた飛行機若しくは回転翼航空機(以下「航空機」という。)の差押えについては、第六十八条第一項から

- 다. 이하 같다)의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서 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 ② 전항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 ③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압류등기가 압류서 송달 전에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기가 되었을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
 - ⑤ 광업권의 압류의 효력은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제69조(압류 부동산의 사용수익)

-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행위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압류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

① 등기되는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또는 「항공법」(1952년 법률 제23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의 압류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부동산

第四項まで(不動産の差押えの手続及び効力 発生時期)の規定を準用する。

- 2 税務署長は、滞納処分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船舶又は航空機を一時停泊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航行中の船舶又は航空機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3 徴収職員は、滞納処分のため必要があると きは、船舶又は航空機の監守及び保存のため 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処分が差押書の送達前にされた場合 には、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十八条第 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処分をした時 に差押えの効力が生ずる。
- 5 税務署長は、停泊中の船舶若しくは航空機を差し押さえた場合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船舶若しくは航空機を停泊させた場合において、営業上の必要その他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滞納者並びにこれらにつき交付要求をした者及び抵当権その他の権利を有する者の申立てにより、航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一条(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 の差押え)

道路運送車両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 五号)の規定により登録を受けた自動車(以 下「自動車」という。)、建設機械抵当法 (昭和二十九年法律第九十七号)の規定によ り登記を受けた建設機械(以下「建設機械」 という。)又は小型船舶の登録等に関する法 律(平成十三年法律第百二号)の規定により 登録を受けた小型船舶(以下「小型船舶」と いう。)の差押えについては、第六十八条第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일시 정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수 직원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감수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처분이 압류서 송달 전에 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했을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세무서장은 정박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정박하도록 한 경우,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 및 이러한 자에 대해 교부요구를 한 자 및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의 신청에 의해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

① 「도로운송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건설기계저당법」(1954년 법률 제97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받은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또는 「소형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0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소형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압류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부터 제

- 一項から第四項まで(不動産の差押えの手続 及び効力発生時期)の規定を準用する。
- 2 前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自動車、 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の差押えについて準用 する。
- 3 税務署長は、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を差し押さえた場合には、滞納者に対し、これらの引渡しを命じ、徴収職員にこれらの占有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4 第五十六条第一項(動産等の差押手続)、 第五十八条(第三者が占有する動産等の差押 手続)及び第五十九条(引渡命令を受けた第 三者等の権利の保護)の規定は、前項の規定 により徴収職員に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 船舶を占有させ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5 徴収職員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占有する 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を滞納者又は これらを占有する第三者に保管させることが 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封印その他の 公示方法によりその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 型船舶が徴収職員の占有に係る旨を明らかに 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また、次項の 規定により自動車の運行、建設機械の使用又 は小型船舶の航行を許可する場合を除き、こ れらの運行、使用又は航行をさせないための 適当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 6 徴収職員は、第三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 占有し、又は保管させた自動車、建設機械又 は小型船舶につき営業上の必要その他相当の 理由があるときは、滞納者並びにこれらにつ き交付要求をした者及び抵当権その他の権利

- 4항까지(부동산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은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 선박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이러한 것들의 인도를 명령하고, 징수 직원에게 이 를 점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56조제1항(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58 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등의 압류절차) 및 제59조(인도명령을 받은 제3자 등의 권 리보호)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직원에게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을 점유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징수 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유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을 체납자 또는 이들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그밖의 공시방법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소형선박이 징수 직원의 점유와 관련된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음 항의 규정에따라 자동차의 운행,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소형선박의 항행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의 운행, 사용 또는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징수 직원은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점유하거나 보관하도록 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 및 이러한 자에 대해 교부요구를 한

を有する者の申立てにより、その運行、使用 又は航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款 無体財産権等の差押

第七十二条 (特許権等の差押えの手続及び効力発生時期)

前三款の規定の適用を受けない財産(以下「無体財産権等」という。)のうち特許権、 著作権その他第三債務者等がない財産の差押 えは、滞納者に対する差押書の送達により行 う。

- 2 前項の差押えの効力は、その差押書が滞納者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 3 税務署長は、無体財産権等でその権利の移転につき登記を要するものを差し押さえたときは、差押えの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差押えの登記が差押書の送達前にされた場合には、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差押えの登記がされた時に差押えの効力が生ずる。
- 5 特許権、実用新案権その他の権利でその処分の制限につき登記をしなければ効力が生じ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の差押えの効力は、第二項及び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差押えの登記がされた時に生ずる。

第七十三条(電話加入権等の差押えの手続及 び効力発生時期)

無体財産権等のうち電話加入権、合名会社の 社員の持分その他第三債務者等がある財産 자와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신 청에 의해 운행, 사용 또는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5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72조(특허권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 ① 전3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재산(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 중 특허권, 저작권, 그 밖에 제3채무자 등이 없는 재산 의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서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 ② 전항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 ③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에 대해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압류했을 때에는 압류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압류등기가 압류서 송달 전에 된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가 되었을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특허권, 실용신안권, 그 밖의 권리로서 처분의 제한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의 압류의 효 력은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가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제73조(전화가입권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무체재산권 등 중 전화가입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그 밖에 제3채무자 등이 있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五号)第二条第一項(定義)に規定する社債等のうちその権利の帰属が振替口座簿の記載又は記録により定まるものとされるもの(次条において「振替社債等」という。)を除く。)の差押えは、第三債務者等に対する差押通知書の送達により行う。

- 2 前項の差押の効力は、その差押通知書が第三債務者等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 3 前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一項に 規定する財産でその権利の移転につき登記を 要するもの(次項に規定するものを除く。) の差押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同条第四項中「差押書」とあるのは、 「差押通知書」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4 前条第五項の規定は、特許権についての専用実施権その他の権利でその処分の制限につき登記をしなければ効力が生じ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の差押えについて準用する。
- 5 第六十五条(債権証書の取上げ)及び第六 十七条(差し押えた債権の取立)の規定は、 第一項に規定する財産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七十三条の二(振替社債等の差押えの手続 及び効力発生時期)

振替社債等の差押えは、振替社債等の発行者 (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発行者」と いう。)及び滞納者がその口座の開設を受け ている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 条第五項(定義)に規定する振替機関等(滞 納者が次の各号に掲げる請求をし、当該各号 に定める買取口座に当該請求に係る振替社債 는 재산(「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75호) 제2조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사채 등 중 권리의 귀속이 대체계좌부의 기재 또는 기록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되는 것(다음 조에서 "대체사채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의 압류는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 ② 전항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 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 ③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서 권리이전에 대해 등기 를 할 필요가 있는 것(다음 항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의 압류에 대하여 준용한 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중 "압류서"는 "압류통지서"로 본다.
- ④ 전조 제5항의 규정은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그 밖의 권리로서 처분의 제한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되어 있는 것의 압류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제65조(채권증서의 몰수) 및 제67조(압류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3조의 2(대체사채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대체사채 등의 압류는 대체사채 등의 발행자(이하 이 항과 다음 항에서 "발행자"라 한다) 및 체납자가 계좌를 개설받은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정의)에서 규정하는 대체기관 등(체납자가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청구를 하고, 해당각 호에서 정하는 매수계좌에 해당 청구와

等についての記載又は記録がされている場合であつて、当該請求に係る振替社債等を差し押さえるときは、発行者が当該買取口座の開設を受けている当該振替機関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振替機関等」という。)に対する差押通知書の送達により行う。

一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百五十五条第一項(株式買取請求に関する会社法の特例)(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二十八条第一項(投資口に関する株式に係る規定の準用)及び第二百三十九条第一項(優先出資に関する株式に係る規定の準用)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株式買取請求、投資口買取請求又は優先出資買取請求 同法第百五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二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百八十 三条第一項(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関する会 社法の特例)(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 法律第二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新投資口予 約権に関する新株予約権に係る規定の準用)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 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新株予 約権買取請求又は新投資口予約権買取請求 同 法第百八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三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十 五条第一項 (新株予約権付社債買取請求に関 する会社法の特例)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付 社債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四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五

관련된 대체사채 등에 대한 기재 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청구와 관련된 대체사채 등을 압류할 때에는 발행자가 해당 매수계좌를 개설받은 해당 대체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기관 등"이라 한다)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실시한다.

1.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55조제1항(주식매수청구에 관한 「회사법」의 특례)(「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제228조제1항(투자지분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및 제239조제1항(우선출자에 관한 주식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 투자지분매수청구 또는 우선출자매수청구: 같은 법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2.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183조제1항(신주예약권 매수청구에 관한「회사법」의 특례)(「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47조의3제1항(신투자구예약권에 관한 신주예약권과 관련된 규정의준용)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또는 신투자구예약권 매수청구: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3.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15조제1항(신주예약권부사채 매수청구에 관한 「회사법」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신 주예약권부사채 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4.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十九条第一項(金融機関の合併における株式 買取請求に関する合併転換法の特例等)に規 定する株式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五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六 十条第一項(金融機関の合併における新株予 約権買取請求に関する合併転換法の特例等)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 る買取口座

六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六 十六条第一項(保険会社の合併における株式 買取請求に関する保険業法の特例等)に規定 する株式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七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六十七条第一項(保険会社の合併におけ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関する保険業法の特例等)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八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三条第一項(金融商品取引所の合併における株式買取請求に関する金融商品取引法の特例等)に規定する株式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九 社債、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 十四条第一項(金融商品取引所の合併におけ 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関する金融商品取引 法の特例等)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 同項に規定する買取口座

2 徴収職員は、振替社債等を差し押さえると きは、発行者に対しその履行を、振替機関等 に対し振替社債等の振替又は抹消を、滞納者 제259조제1항(금융기관 합병의 주식매수청 구에 관한 「합병전환법」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 는 매수계좌

- 5.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60조제1항(금융기관 합병의 신주예약권 매수청구에 관한 「합병전환법」 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6.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66조제1항(보험회사 합병의 주식매수청 구에 관한 「보험업법」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7.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67조제1항(보험회사 합병의 신주예약권 매수청구에 관한 「보험업법」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8.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3조제1항(금융상품거래소 합병의 주식 매수청구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9.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4조제1항(금융상품거래소 합병의 신주예약권 매수청구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의 특례 등)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매수계좌
- ② 징수 직원은 대체사채 등을 압류할 때에는 발행자에게는 그 이행을, 대체기관 등에는 대체사채 등의 대체 또는 소멸을, 체납자

に対し振替社債等の取立てその他の処分又は 振替若しくは抹消の申請を禁じなければなら ない。

- 3 第一項の差押えの効力は、その差押通知書が振替機関等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 4 第六十七条 (差し押さえた債権の取立て)の規定は、振替社債等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七十四条(差し押さえた持分の払戻しの請求)

税務署長は、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に基づく 企業組合、信用金庫その他の法人で組合員、 会員その他の持分を有する構成員が任意に (脱退につき予告その他一定の手続を要する 場合には、これをした後任意に) 脱退するこ とができるもの(合名会社、合資会社及び合 同会社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組合 等」という。)の組合員、会員その他の構成 員である滞納者の持分を差し押さえた場合に おいて、当該持分につき次に掲げる理由があ り、かつ、その持分以外の財産につき滞納処 分を執行してもなお徴収すべき国税に不足す 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組合等に対し、 その持分の一部の払戻し(組合等による譲受 けが認められている持分については、譲受 け)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その持分を再度換価に付してもなお買受人 がないこと。
- 二 その持分の譲渡につき法律又は定款に制限 があるため、譲渡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
- 2 前項に規定する請求は、三十日(組合等からの脱退につき、法律又は定款の定めによ

에게는 대체사채 등의 추심, 그 밖에 처분, 대체 또는 말소의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대체기관 등에 송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 ④ 제67조(압류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은 대체사채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4조(압류한 지분의 환급청구)

-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에 의거한 기업조합, 신용금고, 그 밖의 법 인으로, 조합원, 회원, 그 밖에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임의로(탈퇴에 대해 예고 및 그 밖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 을 한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것(합명 회사, 합자회사 및 합동회사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의 조합 원, 회원, 그 밖의 구성원인 체납자의 지분 을 압류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가 있고, 지분 이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여전히 징수할 국세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 등 에 대해 지분의 일부 환급(조합 등에 의한 양수가 인정된 지분에 대해서는 양수)을 청 구할 수 있다.
- 1. 지분을 다시 환가에 붙여도 여전히 매수 인이 없을 것
- 2. 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어서 양도할 수 없을 것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청구는 30일(조합 등에서의 탈퇴에 대해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

り、これと異なる一定期間前に組合等に予告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ものにあつては、その期間)前に組合等にその予告をした後でなければ、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六款 差押禁止財産

第七十五条 (一般の差押禁止財産)

次に掲げる財産は、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滞納者及び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 (届出をしていないが、事実上婚姻関係にあ る者を含む。) その他の親族(以下「生計を 一にする親族」という。) の生活に欠くこと ができない衣服、寝具、家具、台所用具、畳 及び建具
- 二 滞納者及び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親族の 生活に必要な三月間の食料及び燃料
- 三 主として自己の労力により農業を営む者の 農業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器具、肥料、労役 の用に供する家畜及びその飼料並びに次の収 穫まで農業を続行するために欠くことができ ない種子その他これに類する農産物

四 主として自己の労力により漁業を営む者の水産物の採捕又は養殖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漁網その他の漁具、えさ及び稚魚その他これに類する水産物

五 技術者、職人、労務者その他の主として自己の知的又は肉体的な労働により職業又は営業に従事する者(前二号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その業務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器具その他の物(商品を除く。)

에 따라 이와 다른 일정기간 전에 조합 등에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기간) 전에 조합 등에 예고를 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6관 압류금지 재산

제75조(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

- ① 다음에 열거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1. 체납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 밖의 친족(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 한다)의 생활 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의복, 침구, 가구, 주방 용품, 다다미 및 창호
- 2. 체납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및 연료
- 3. 주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 비료, 노역의 용도에 사용하는 가축 및 사료, 다음 수확까지 농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종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농산물
- 4. 주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수산물의 채취 또는 양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어망, 그 밖에 어구, 사료 및 치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산물
- 5. 기술자, 직공,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신의 지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전2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 그 밖의 것(상품을 제외한다)

六 実印その他の印で職業又は生活に欠くこと ができないもの

七 仏像、位牌 その他礼拝又は祭祀に直接供するため欠くことができない物

八 滞納者に必要な系譜、日記及びこれに類す る書類

九 滞納者又はその親族が受けた勲章その他名 誉の章票

十 滞納者又は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親族の 学習に必要な書籍及び器具

十一 発明又は著作に係るもので、まだ公表していないもの

十二 滞納者又は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親族 に必要な義手、義足その他の身体の補足に供 する物

十三 建物その他の工作物について、災害の防止又は保安のため法令の規定により設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用の機械又は器具、避難器具その他の備品

2 前項第一号(畳及び建具に係る部分に限 る。)及び第十三号の規定は、これらの規定 に規定する財産をその建物その他の工作物と ともに差し押えるときは、適用しない。

第七十六条(給与の差押禁止)

給料、賃金、俸給、歳費、退職年金及びこれ らの性質を有する給与に係る債権(以下「給 料等」という。)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金 額の合計額に達するまでの部分の金額は、差

- 6. 인감도장, 그 밖의 도장으로 직업 또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 7. 불상, 위패, 그 밖에 예배 또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것
- 8. 체납자에게 필요한 족보, 일기 및 이와 유사한 서류
- 9. 체납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그 밖에 명예의 장표
- 10.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의 학습에 필요한 서적 및 기구
- 11. 발명 또는 저작과 관련된 것으로 아직 공표하지 않은 것
- 12.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에게 필요한 의수, 의족, 그 밖에 신체 보 족에 사용하는 것
- 13.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대해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용 기계 또는 기구, 피난 기구, 그 밖의 비품
- ② 전항 제1호(다다미 및 창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와 제13호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함께 압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6조(급여의 압류금지)

①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급여와 관련된 채권(이하"급료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

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滞納者が同一の期間につき二以上の給料等の支払を受けるときは、その合計額につき、第四号又は第五号に掲げる金額に係る限度を計算するものとする。

一 所得税法第百八十三条(給与所得に係る源泉徴収義務)、第百九十条(年末調整)、第百九十二条(年末調整に係る不足額の徴収) 又は第二百十二条(非居住者等の所得に係る源泉徴収義務)の規定によりその給料等につき徴収される所得税に相当する金額

二 地方税法第三百二十一条の三(個人の市町村民税の特別徴収)その他の規定によりその給料等につき特別徴収の方法によつて徴収される道府県民税及び市町村民税に相当する金額

三 健康保険法(大正十一年法律第七十号)第百六十七条第一項(報酬からの保険料の控除)その他の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給料等から控除される社会保険料(所得税法第七十四条第二項(社会保険料控除)に規定する社会保険料をいう。)に相当する金額

四 滞納者(その者と生計を一にする親族を含む。)に対し、これらの者が所得を有しないものとして、生活保護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四十四号)第十二条(生活扶助)に規定する生活扶助の給付を行うことと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扶助の基準となる金額で給料等の支給の基礎となつた期間に応ずるもの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金額

五 その給料等の金額から前各号に掲げる金額 の合計額を控除した金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 액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체납자가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둘 이상의 급료 등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합계액에 대해제4호 또는 제5호에 열거하는 금액과 관련된 한도를 계산한다.

1. 「소득세법」제183조(급여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 제190조(연말조정), 제192 조(연말조정과 관련된 부족액의 징수) 또는 제212조(비거주자 등의 소득과 관련된 원천 징수의무)의 규정에 따라 급료 등에 대해 징수되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제321조의3(개인의 시정촌 민세의 특별징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급 료 등에 대해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 는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에 해당하는 금액

3.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제 167조제1항(보수에서 보험료의 공제),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급료 등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소득세법」 제74조제2항(사회보험료공제)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4. 체납자(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러한 자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생활보호법」(1950년 법률 제144호) 제12조(생활부조)에서 규정하는 생활부조 급부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부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급료 등의 지급의 기초가된 기간에 따른 것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5. 급료 등의 금액에서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

する金額(その金額が前号に掲げる金額の二倍に相当する金額をこえるときは、当該金額)

- 2 給料等に基き支払を受けた金銭は、前項第四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金額の合計額に、その給料等の支給の基礎となつた期間の日数のうちに差押の日から次の支払日までの日数の占める割合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を限度として、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い。
- 3 賞与及びその性質を有する給与に係る債権 については、その支払を受けるべき時におけ る給料等とみなして、第一項の規定を適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第四号又は第五 号に掲げる金額に係る限度の計算について は、その支給の基礎となつた期間が一月であ るものとみなす。
- 4 退職手当及びその性質を有する給与に係る 債権(以下「退職手当等」という。) につい ては、次に掲げる金額の合計額に達するまで の部分の金額は、差し押えることができな い。
- 一 所得税法第百九十九条(退職所得に係る源泉徴収義務)又は第二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 その退職手当等につき徴収される所得税に相 当する金額
- 二 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中「給料等」とあるのを「退職手当等」として、これらの規定 を適用して算定した金額
- 三 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金額で同号に規定する期間を一月として算定したものの三倍に相当する金額

- 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전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액)
- ② 급료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은 전항 제4호와 제5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급료 등의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의 일수 중에 압류일부터 다음 지급일까지의 일수가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로 압류할 수 없다.
- ③ 상여 및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급여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때의 급료 등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열거 하는 금액과 관련된 한도의 계산에 대해서 는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개월인 것으로 본다.
- ④ 퇴직수당 및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급여와 관련된 채권(이하 "퇴직수당 등"이라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의합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
- 1. 「소득세법」제199조(퇴직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의무)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 등에 대해 징수되는 소득세에 해 당하는 금액
- 2. 제1항제2호와 제3호 중 "급료 등"을 "퇴 직수당 등"으로 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3. 제1항제4호에 열거하는 금액으로,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 것 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四 退職手当等の支給の基礎となつた期間が五年をこえる場合には、そのこえる年数一年につき前号に掲げる金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金額

5 第一項、第二項及び前項の規定は、滞納者 の承諾があるときは適用しない。

第七十七条(社会保険制度に基づく給付の差押禁止)

社会保険制度に基づき支給される退職年金、 老齢年金、普通恩給、休業手当金及びこれら の性質を有する給付(確定給付企業年金法 (平成十三年法律第五十号) 第三十八条第一 項(老齢給付金の支給方法)の規定に基づい て支給される年金、確定拠出年金法(平成十 三年法律第八十八号)第三十五条第一項(老 齢給付金の支給方法)(同法第七十三条(企 業型年金に係る規定の準用)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基づいて支給され る年金その他政令で定める退職年金を含 む。) に係る債権は給料等と、退職一時金、 一時恩給及びこれらの性質を有する給付(確 定給付企業年金法第三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 基づいて支給される一時金及び同法第四十二 条 (脱退一時金の支給方法) の規定に基づい て支給される脱退一時金、確定拠出年金法第 三十五条第二項(同法第七十三条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いて支給 される一時金その他政令で定める退職一時金 を含む。) に係る債権は退職手当等とそれぞ れみなして、前条の規定を適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社会保険制度とは、次に掲げる法律に基づく保険、共済又は恩給に関す

4. 퇴직수당 등의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수 1 년에 대해 전호에 열거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은 체납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7조(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한 급부의 압류 금지)

① 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퇴직 연금, 노령연금, 보통은급, 휴직수당금 및 이 와 같은 성질을 가진 급부(「확정급부기업 연금법」(2001년 법률 제50호) 제38조제1 항(노령급부금의 지급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확정갹출연금법」(2001년 법률 제88호) 제35조제1항(노령급부금의 지 급방법)(같은 법 제73조(기업형 연금과 관 련된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와 관련된 채권은 급료 등으로 보며, 퇴 직일시금, 일시은급 및 이와 같은 성질을 가 진 급부(「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 및 같은 법 제42조(탈퇴일시금의 지급방법)의 규정 에 따라 지급되는 탈퇴일시금. 「확정갹출연 금법」 제35조제2항(같은 법 제73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 급되는 일시금,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퇴 직일시금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채권은 퇴 직수당 등으로 보고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보험제도란 다음에 열거하는 법률에 의거한 보험, 공제 또는

る制度その他政令で定めるこれらに類する制 度をいう。

- 一 厚生年金保険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十 五号)
- 二 船員保険法 (昭和十四年法律第七十三号)
- 三 国民年金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四十一号)

四 恩給法(大正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他の法律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五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二十八号)

六 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昭和三十七年法 律第百五十二号)

七 私立学校教職員共済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二百四十五号)

第七十八条 (条件付差押禁止財産)

次に掲げる財産(第七十五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農業等に欠くことができない財産)に掲げる財産を除く。)は、滞納者がその国税の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で、換価が困難でなく、かつ、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ないものを提供したときは、その選択により、差押をしないものとする。

- 一農業に必要な機械、器具、家畜類、飼料、 種子その他の農産物、肥料、農地及び採草放 牧地
- 二 漁業に必要な漁網その他の漁具、えさ、稚

은급에 관한 제도,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이들과 유사한 제도를 말한다.

- 1. 「후생연금보험법」(1954년 법률 제115 호)
- 2. 「선원보험법」(1939년 법률 제73호)
- 3. 「국민연금법」(1959년 법률 제141호)
- 4. 「은급법」(1923년 법률 제48호)(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1958년 법률 제128호)
- 6.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1962년 법률 제152호)
- 7.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1953년 법률 제245호)

제78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에 열거하는 재산(제7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농업 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재산)에 열거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은 체납자가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환가가 곤란하지 않고 제3자의 권리의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공했을 때에는 그 선택에 따라 압류를 하지 않아야한다.

-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그 밖에 농산물, 비료, 농지 및 채초방 목지
-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그 밖에 어구, 사료,

魚その他の水産物及び漁船

三 職業又は事業(前二号に規定する事業を除 く。)の継続に必要な機械、器具その他の備 品及び原材料その他たな卸をすべき資産

第七款 差押の解除

第七十九条(差押えの解除の要件)

徴収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ときは、差押え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納付、充当、更正の取消その他の理由により差押えに係る国税の全額が消滅したとき。
- 二 差押財産の価額がその差押えに係る滞納処 分費及び差押えに係る国税に先立つ他の国 税、地方税その他の債権の合計額を超える見 込みがなくなつたとき。
- 2 徴収職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差押財産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その差押え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差押えに係る国税の一部の納付、充当、更正の一部の取消、差押財産の値上りその他の理由により、その価額が差押えに係る国税及びこれに先立つ他の国税、地方税その他の債権の合計額を著しく超過すると認められるに至ったとき。
- 二 滞納者が他に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適 当な財産を提供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財産 を差し押さえたとき。
- 三 差押財産について、三回公売に付しても入札又は競り売りに係る買受けの申込み(以下

치어, 그 밖의 수산물 및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전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기구, 그 밖에 비품 및 원재료, 그 밖에 도매로 팔아야 할 자산

제7관 압류의 해제

제79조(압류해제의 요건)

- ① 징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납부, 충당, 경정의 취소, 그 밖의 이유로 압류와 관련된 국세 전액이 소멸했을 때
- 2. 압류재산의 가액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처 분비 및 압류와 관련된 국세에 우선하는 다 른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 ② 징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1. 압류와 관련된 국세 일부의 납부, 충당, 경정 일부의 취소, 압류재산의 가격 상승, 그 밖의 이유로 그 가액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 및 이것에 우선하는 다른 국세, 지방 세, 그 밖의 채권의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한 다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 2.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재산을 제공한 경우,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
- 3. 압류재산에 대해 세 차례 공매에 붙여도 입찰 또는 경매와 관련된 매수신청(이하 "입

「入札等」という。)が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差押財産の形状、用途、法令による利用の規制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更に公売に付しても買受人がないと認められ、かつ、随意契約による売却の見込み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第八十条 (差押えの解除の手続)

差押の解除は、その旨を滞納者に通知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ただし、債権及び第三債務者等のある無体財産権等の差押の解除は、その旨を第三債務者等に通知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 2 徴収職員は、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の差押 を解除したときは、当該各号に掲げる手続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一号に規定 する除去は、滞納者又はその財産を占有する 第三者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 一 動産又は有価証券 その引渡及び封印、公示書その他差押を明白にするために用いた物の除去
- 二 債権又は第三債務者等がある無体財産権等 滞納者への通知
- 3 税務署長は、不動産その他差押の登記をした財産の差押を解除したときは、その登記のまつ消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二項第一号の動産又は有価証券の引渡は、滞納者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場所におい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差押の時に滞納者以外の第三者が占有していたものにつ

찰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의 형상, 용도, 법령에 따른 이용의 규제,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 인이 없다고 인정되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 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80조(압류의 해제 절차)

- ① 압류의 해제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실시한다. 다만, 채권 및 제3채무자 등이 있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해제는 그 사실을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 실시한다.
- ② 징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거는 체납자 또는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인도 및 봉인, 공시 서, 그 밖에 압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 용한 것의 제거
- 2. 채권 또는 제3채무자 등이 있는 무체재 산권 등: 체납자에 대한 통지
- ③ 세무서장은 부동산, 그 밖에 압류등기를 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했을 때에는 등기의 말소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 도는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 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장소에서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시에 체납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던

いては、滞納者に対し引渡をすべき旨の第三 者の申出がない限り、その第三者に引き渡さ 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条第一項各号又は同条第二項第一号の規 定に該当する場合のうち、更正の取消その他 国の責に帰すべき理由による場合 差押の時に 存在した場所
- 二 その他の場合 差押を解除した時に存在する場所

5 第二項第一号及び前項の規定は、債権又は 自動車、建設機械若しくは小型船舶の差押え を解除した場合において、第六十五条(債権 証書の取上げ)(第七十三条第五項(権利証 書の取上げ)の規定により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り取り上げた証書又は第七 十一条第三項(差し押さえた自動車等の占 有)の規定により徴収職員が占有した自動 車、建設機械若しくは小型船舶があるときに ついて準用する。

第八十一条(質権者等への差押解除の通知)

税務署長は、差押を解除した場合において、 第五十五条各号(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の通 知)に掲げる者のうち知れている者及び交付 要求をしている者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 にその旨その他必要な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二節 交付要求

第八十二条(交付要求の手続)

滞納者の財産につき強制換価手続が行われた 場合には、税務署長は、執行機関(破産法 것은, 체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3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1. 전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경정의 취 소, 그 밖에 국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압류 시에 존재한 장소
- 2. 그 밖의 경우: 압류를 해제했을 때에 존 재하는 장소
- ⑤ 제2항제1호 및 전항의 규정은 채권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제65조(채권증서의 몰수)(제73조제5항(권리증서의 몰수)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증서 또는 제71조제3항(압류한 자동차 등의 점유)의 규정에 따라 징수 직원이점유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이 있을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1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제55조 각호(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열거하는 자 중 알고 있는 자 및 교부요구를 한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자에게 그 취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교부요구

제82조(교부요구의 절차)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환가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기관(「파

(平成十六年法律第七十五号)第百十四条第一号(租税等の請求権の届出)に掲げる請求権に係る国税の交付要求を行う場合には、その交付要求に係る破産事件を取り扱う裁判所。第八十四条第二項(交付要求の解除)において同じ。)に対し、滞納に係る国税につき、交付要求書により交付要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税務署長は、交付要求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滞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五十五条(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の通 知)の規定は、交付要求をした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

第八十三条 (交付要求の制限)

税務署長は、滞納者が他に換価の容易な財産で第三者の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ないものを有しており、かつ、その財産によりその国税の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交付要求をしないものとする。

第八十四条 (交付要求の解除)

税務署長は、納付、充当、更正の取消その他の理由により交付要求に係る国税が消滅したときは、その交付要求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交付要求の解除は、その旨をその交付要求に係る執行機関に通知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 3 第五十五条 (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の通知)及び第八十二条第二項 (交付要求の通知)の規定は、交付要求を解除した場合につ

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제114조제1호 (조세 등의 청구권 신고)에 열거하는 청구 권과 관련된 국세 교부요구를 하는 경우에 는 교부요구와 관련된 파산사건을 취급하는 법원. 제84조제2항(교부요구의 해제)에서 같다)에 대해 체납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교부요구서로 교부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교부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55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의 규정은 교부요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83조(교부요구의 제한)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른 환가가 용이한 재산으로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재산으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84조(교부요구의 해제)

-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경정의 취소, 그밖의 이유로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가 소멸했을 때에는 교부요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교부요구의 해제는 그 취지를 교부요구 와 관련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실시한다.
- ③ 제55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제82조제2항(교부요구의 통지)의 규정은 교 부요구를 해제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いて準用する。

第八十五条(交付要求の解除の請求)

強制換価手続により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は、交付要求があつたときは、税務 署長に対し、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 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交付要求を解除すべ 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その交付要求により自己の債権の全部又は 一部の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
- 二 滞納者が他に換価の容易な財産で第三者の 権利の目的となつていないものを有してお り、かつ、その財産によりその交付要求に係 る国税の全額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2 税務署長は、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交付要求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その請求を相当と認めないときは、その旨をその請求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六条(参加差押えの手続)

税務署長は、第四十七条(差押えの要件)の 規定により差押え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 おいて、滞納者の財産で次に掲げるものにつ き既に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がされていると きは、当該財産についての交付要求は、第八 十二条第一項(交付要求の手続)の交付要求 書に代えて参加差押書を滞納処分をした行政 機関等に交付して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動産及び有価証券
- 二不動産、船舶、航空機、自動車、建設機械

제85조(교부요구의 해제청구)

- ① 강제환가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교부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부요구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 1. 교부요구에 의해 본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없을 것
- 2. 체납자가 다른 환가가 용이한 재산으로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재산으로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청구가 있은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요구 를 해제해야 하며,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를 청구 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참가압류 절차)

- ① 세무서장은 제47조(압류의 요건)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 이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교부요구는 제82조제1항(교부요구의 절차)의 교부요구서 대신 참가압류서를 체납처분을 한 행정기관 등에 교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동산 및 유가증권
- 2.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及び小型船舶

三 電話加入権

- 2 税務署長は、前項の交付要求(以下「参加 差押え」という。)をしたときは、参加差押 通知書により滞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この場合において、参加差押えをした財 産が電話加入権であるときは、あわせて第三 債務者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税務署長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財産に つき参加差押えをしたときは、参加差押えの 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五十五条(質権者等に対する差押えの通 知)の規定は、参加差押えをした場合につい て準用する。

第八十七条 (参加差押えの効力)

参加差押え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参加差押えに係る財産につきされていた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が解除されたときは、その参加差押え(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財産について二以上の参加差押えがあるときは、そのうち最も先に登記されたものとし、その他の財産について二以上の参加差押えがあるときは、そのうち最も先にされたものとする。)は、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時に遡つて差押えの効力を生ずる。

- 一 動産及び有価証券 参加差押書が滞納処分 による差押えをした行政機関等に交付された 時
- 二 不動産(次号に掲げる財産を除く。)、船

및 소형선박

- 3. 전화가입권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교부요구(이하 "참가 압류"라 한다)를 했을 때에는 참가압류통지 서로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압류를 한 재산이 전화가입권일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했을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 제55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의 규정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 한다.

제87조(참가압류의 효력)

- ① 참가압류를 한 경우, 참가압류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되어 있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참가압류(전조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참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해 둘이상의 참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먼저 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정하는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발생한다.
- 1. 동산 및 유가증권: 참가압류서가 체납처 분에 따른 압류를 한 행정기관 등에 교부되 었을 때
- 2. 부동산(다음 호에 열거하는 재산을 제외

舶、航空機、自動車、建設機械及び小型船舶 参加差押通知書が滞納者に送達された時(参 加差押えの登記がその送達前にされた場合に は、その登記がされた時)

三 鉱業権 参加差押えの登録がされた時

四 電話加入権 参加差押通知書が第三債務者 に 決達された 時

- 2 税務署長は、差し押さえた動産又は有価証券につき参加差押書の交付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その動産又は有価証券の差押えを解除すべきときは、その動産又は有価証券を前項の規定により差押えの効力を生ずべき参加差押えをした行政機関等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差し押さえた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で第七十一条第三項(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の差押え)の規定により徴収職員が占有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 3 参加差押えをした税務署長は、その参加差押えに係る滞納処分による差押財産が相当期間内に換価に付されないときは、速やかにその換価をすべきことをその滞納処分をした行政機関等に催告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八条 (参加差押えの制限、解除等)

第八十三条から第八十五条まで(交付要求の制限、解除等)の規定は、参加差押えについて準用する。

2 税務署長は、参加差押えの登記をした財産の参加差押えを解除したときは、その登記の抹消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참가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 달되었을 때(참가압류의 등기가 송달 전에 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되었을 때)

- 3. 광업권: 참가압류의 등록이 되었을 때
- 4. 전화가입권: 참가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 ②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참가압류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해제해야 할 때에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전항의 규정에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참가압류를 한행정기관 등에 인도하여야 한다. 압류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제71조제3항(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의 규정에 따라 징수 직원이 점유하고있는 것에 대하여도 같다.
- ③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와 관련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이 상당 기간 내에 환가에 붙여지지 않을 때에는 신 속히 환가를 할 것을 체납처분을 한 행정기 관 등에 최고할 수 있다.

제88조(참가압류의 제한, 해제 등)

- ①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교부요구의 제한, 해제 등)의 규정은 참가압류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②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 의 참가압류를 해제했을 때에는 등기의 말 소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 3 税務署長は、電話加入権の参加差押えを解除したときは、その旨を第三債務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二条及び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参加差押え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三節 財産の換価

第一款 通則

第八十九条 (換価する財産の範囲等)

差押財産(金銭、債権及び第五十七条(有価証券に係る債権の取立て)の規定により債権の取立てをする有価証券を除く。)又は次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参加差押不動産(以下この節において「差押財産等」という。)は、この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換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差し押さえた債権のうち、その全部又は一部の弁済期限が取立てをしようとする時から 六月以内に到来しないもの及び取立てをする 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は、この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換価するこ とができる。
- 3 税務署長は、相互の利用上差押財産等を他の差押財産等(滞納者を異にするものを含む。)と一括して同一の買受人に買い受けさせることが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らの差押財産等を一括して公売に付し、又は随意契約により売却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九条の二(参加差押えをした税務署長

- ③ 세무서장은 전화가입권의 참가압류를 해 제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2조 및 전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참 가압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산의 환가

제1관 통칙

제89조(환가하는 재산의 범위 등)

- ① 압류재산(금전, 채권 및 제57조(유가증 권과 관련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또 는 다음 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참가압 류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압류재산 등"이 라 한다)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가하여야 한다.
- ② 압류한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 기한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 및 추심을 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가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상호 이용상 압류재산 등을 다른 압류재산 등(체납자를 달리 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일괄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압류재산 등을 일괄하여 공 매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다.

제89조의 2(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에 의한

による換価)

参加差押えをした税務署長は、その参加差押 えに係る不動産(以下「参加差押不動産」と いう。)が第八十七条第三項(参加差押えの 効力)の規定による催告をしてもなお換価に 付されないときは、同項の滞納処分をした行 政機関等の同意を得て、参加差押不動産につ き換価の執行をする旨の決定(以下「換価執 行決定」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参加差押不動産につき強制執行若しく は担保権の実行としての競売が開始されてい は担保権の実行としての競売が開始されているとき、又は国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で換価 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ものの適用 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滞納処分をした行政機関等は、同項の参加差押えをした税務署長による換価の執行に係る同意の求め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換価の執行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に同意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同項の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に係る不動産につき既に他の参加差押えをした行政機関等による換価の執行に係る同意をし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換価執行決定は、第一項の参加差押えをした税務署長による換価の執行に係る同意をした行政機関等(以下「換価同意行政機関等」という。)に告知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4 換価執行決定をした税務署長(次条において「換価執行税務署長」という。)は、速やかに、その旨を滞納者及び参加差押不動産 (換価執行決定をしたものに限る。以下「特定参加差押不動産」という。)につき交付要

환가)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와 관련된 부동산(이하 "참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이 제87조제3항(참가압류의 효력)의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하여도 여전히 환가에 붙여지지 않을 때에는 같은 항의 체납처분을한 행정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환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환가집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다만, 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나 국세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서 환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의 적용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체납처분을 한 행정기관 등은 같은 항의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에 의한 환가집행과 관련된 동의 요청이 있은 경우, 환가의 집행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동의한다. 다만, 같은 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이미 다른 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 등에 의한 환가집행과 관련된 동의를 했을 때에는 예외로한다.

③ 환가집행결정은 제1항의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에 의한 환가집행과 관련된 동의를 한 행정기관 등(이하 "환가 동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 생한다.

④ 환가집행결정을 한 세무서장(다음 조에서 "환가집행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속히 그 사실을 체납자 및 참가압류 부동산(환가집행결정을 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교부요구

求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九条の三(換価執行決定の取消し)

換価執行税務署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ときは、換価執行決定を取り消さな ければならない。

- 一 換価執行決定に係る参加差押え(以下「特定参加差押え」という。)を解除したとき。
- 二 換価同意行政機関等の滞納処分による差押 え(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次条において 「特定差押え」という。)が解除されたと き。
- 三 特定参加差押不動産の価額が特定参加差押 えに係る滞納処分費及び特定参加差押えに係 る国税に先立つ他の国税、地方税その他の債 権の合計額を超える見込みがなくなつたと き。

四 前三号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き。

- 2 換価執行税務署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換価執行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特定参加差押えに係る国税の一部の納付、 充当、更正の一部の取消し、特定参加差押不 動産の価額の増加その他の理由により、その 価額が特定参加差押えに係る国税及びこれに 先立つ他の国税、地方税その他の債権の合計 額を著しく超過すると認められるに至つたと き。
- 二 滞納者が他に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適 当な財産を提供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財産

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3(환가집행결정의 취소)

- ① 환가집행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가집행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환가집행결정과 관련된 참가압류(이하 "특정참가압류"이라 한다)를 해제했을 때
- 2. 환가 동의 행정기관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 "특정압류"라 한다)가 해제되었을 때
- 3.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의 가액이 특정참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처분비 및 특정참가압류 와 관련된 국세에 우선하는 다른 국세, 지방 세, 그 밖의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할 가능성 이 없어졌을 때
- 4. 전3호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할
- ② 환가집행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가집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특정참가압류와 관련된 국세 일부의 납부, 충당, 경정 일부의 취소, 특정참가압류부동산 가액의 증가, 그 밖의 이유로 그 가액이 특정참가압류와 관련된 국세 및 이에우선하는 다른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의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될 때
- 2.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적당한 재

を差し押さえたとき。

三 特定参加差押不動産について、三回公売に付しても入札等が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特定参加差押不動産の形状、用途、法令による利用の規制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更に公売に付しても買受人がないと認められ、かつ、随意契約による売却の見込み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四 前三号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とき。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換価執行決定を取り消した税務署長は、速やかに、その旨を滞納者、換価同意行政機関等及び特定参加差押不動産につき交付要求をした者(第一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よる換価執行決定の取消しにあつては、滞納者及び特定参加差押不動産につき交付要求をした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特定参加差押不動産については、換価同意 行政機関等が行う公売その他滞納処分による 売却のための手続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 定により換価執行決定が取り消された後でな 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九条の四(換価執行決定の取消しをし た税務署長による換価の続行)

特定差押えが解除された場合において、前条 第一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 による換価執行決定の取消しに係る参加差押 えにつき第八十七条第一項(参加差押えの効 力)の規定により差押えの効力が生ずるとき (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は、当該換価執 行決定の取消しをした税務署長は、当該換価 산을 제공한 경우,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

3.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세차례 공매에 붙여도 입찰 등이 없는 경우,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의 형상, 용도, 법령에 따른 이용의 규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다고 인정되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전3호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할 때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환가집행결정을 취소한 세무서장은 신속히 그 사실을 체납자, 환가 동의 행정기관 등 및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교부요구를 한 자(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환가집행결정의 취소 시에는 체납자 및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교부요구를 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환가 동의 행정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매, 그 밖에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을 위한 절차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가집행결정이 취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89조의4(환가집행결정의 취소를 한 세무서 장에 의한 환가의 계속)

특정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조 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환가집행결정의 취소와 관련된 참가압류에대해 제87조제1항(참가압류의 효력)의 규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다음에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환가집행결정의 취소를 한 세무서장은 해당 환

執行決定に基づき行つた換価手続を当該差押 えによる換価手続とみなして、当該差押えに 係る不動産(以下この条において「差押不動 産」という。)につき換価を続行することが できる。

- 一 差押不動産につき強制執行又は担保権の実 行としての競売が開始されている場合
- 二 当該税務署長が行つた当該換価執行決定の 取消しに係る参加差押えよりも先にされた交 付要求がある場合
- 三 特定差押えが解除される前に特定参加差押 不動産を換価したとすれば消滅する権利で、 差押不動産の換価に伴い消滅しないものがあ る場合

第九十条 (換価の制限)

果実は成熟した後、蚕は繭となつた後でなければ、換価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は、生産工程中における仕掛品 (栽培品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を含む。)で、完成品となり、又は一定の生産過程に達するのでなければ、その価額が著しく 低くて通常の取引に適しない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 3 第二次納税義務者が第三十二条第一項(第 二次納税義務の通則)の告知、同条第二項の 督促又はこれらに係る国税に関する滞納処分 につき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その訴訟の係 属する間は、当該国税につき滞納処分による 財産の換価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保証人が 国税通則法第五十二条第二項(担保の処分) の告知、同条第三項の督促若しくはこれらに

가집행결정에 기초하여 실시한 환가절차를 해당 압류에 의한 환가절차로 보고, 해당 압 류와 관련된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환가를 계속할 수 있다.

- 1. 압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담보 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 2. 해당 세무서장이 실시한 해당 환가집행결 정의 취소와 관련된 참가압류보다 먼저 행 해진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
- 3. 특정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을 환가했을 경우 소멸하는 권리로, 압류 부동산의 환가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

제90조(환가의 제한)

- ① 과실은 익은 후, 누에는 고치가 된 후에만 환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생산공정 중 제작 중인 상품(재배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다)으로, 완성품이 되거나 일정한 생산 과정에 이른 것이 아니면 가액이 현저히 낮 아서 통상적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32조제1항(제2차 납세의무의 통칙)의 고지, 같은 조 제2항의 독촉 또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그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해당 국세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보증인이 「국세통칙법」 제52조제2 항(담보의 처분)의 고지, 같은 조 제3항의

係る国税に関する滞納処分につき訴えを提起したとき、又は第五十五条第二号(仮登記の権利者に対する差押えの通知)の通知(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係るものに限る。)に係る差押えにつき訴えの提起があつたときにおいても、また同様とする。

第九十一条(自動車等の換価前の占有)

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の換価は、徴収職員が第七十一条第三項(差し押さえた自動車等の占有)の規定によりこれらを占有した後に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換価に支障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九十二条 (買受人の制限)

滞納者は、換価の目的となつた自己の財産 (第二十四条第三項(譲渡担保財産に対する 執行)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譲渡担保財産を 除く。)を、直接であると間接であるとを問 わず、買い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国税庁、 国税局、税務署又は税関に所属する職員で国 税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員は、換価の目 的となつた財産について、また同様とする。

第九十三条 (修理等の処分)

税務署長は、差押財産等を換価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滞納者の同意を得て、その財産につき修理その他その価額を増加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款 公売

第九十四条 (公売)

税務署長は、差押財産等を換価するときは、

독촉 또는 이와 관련된 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또는 제55조제2호(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의 통지(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관련된 것에한정한다)와 관련된 압류에 대해 소송 제기가 있었을 때에도 같다.

제91조(자동차 등의 환가 전의 점유)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환가는 징수 직원이 제71조제3항(압류한 자동차 등 의 점유)의 규정에 따라 이들을 점유한 후 에 실시한다. 다만, 환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는 환가의 목적으로 된 본인의 재산 (제24조제3항(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집행)의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담보재산을 제외한다)을 직·간접을 불문하고 매수할 수 없다. 국세청, 국세국, 세무서 또는 세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에 대하여도 같다.

제93조(수리 등의 처분)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등을 환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재산에 대해 수리, 그 밖에 가액을 증가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관 공매

제94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등을 환가할 때에

これを公売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売は、入札又は競り売りの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五条 (公売公告)

税務署長は、差押財産等を公売に付するときは、公売の日の少なくとも十日前までに、次に掲げる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公売に付する財産(以下「公売財産」という。)が不相応の保存費を要し、又はその価額を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期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公売財産の名称、数量、性質及び所在
- 二 公売の方法
- 三 公売の日時及び場所
- 四 売却決定の日時及び場所
- 五 公売保証金を提供させるときは、その金額

六 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

七 公売財産の買受人について一定の資格その他の要件を必要とするときは、その旨

八 公売財産上に質権、抵当権、先取特権、留置権その他その財産の売却代金から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有する者は、売却決定の日の前日までにその内容を申し出るべき旨

九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公売に関し重

는 이를 공매에 붙여야 한다.

②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5조(공매공고)

-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등을 공매에 붙일 때에는 적어도 공매일의 10일 전까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에 붙이는 재산(이하 "공매재산"이라 한다)이 과다한 보존비용이 들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공매재산의 명칭, 수량, 성질 및 소재
- 2. 공매의 방법
- 3. 공매의 일시 및 장소
- 4.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 5. 공매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할 때에는 그 금액
- 6.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7.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해 일정한 자격,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
- 8. 공매재산상에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유 치권, 그 밖에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매각결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 지
- 9.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공매에

要と認められる事項

2 前項の公告は、税務署の掲示場その他税務 署内の公衆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して行う。 ただし、他の適当な場所に掲示する方法、官 報又は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 紙に掲げる方法その他の方法を併せて用いる ことを妨げない。

第九十六条(公売の通知)

税務署長は、前条の公告をしたときは、同条 第一項各号(第八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 及び公売に係る国税の額を滞納者及び次に掲 げる者のうち知れてい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一 公売財産につき交付要求をした者
- 二 公売財産上に質権、抵当権、先取特権、留 置権、地上権、賃借権その他の権利を有する 者

三 換価同意行政機関等

2 税務署長は、前項の通知をするときは、公 売財産の売却代金から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 きる者のうち知れている者に対し、その配当 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国税、地方税その他の 債権につき第百三十条第一項(債権額の確認 方法)に規定する債権現在額申立書をその財 産の売却決定をする日の前日までに提出すべ き旨の催告をあわせ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七条(公売の場所)

公売は、公売財産の所在する市町村(特別区を含む。)において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税務署長が必要と認めるときは、他の場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항의 공고는 세무서의 게시장, 그 밖에 세무서 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른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기재하는 방법, 그밖의 방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96조(공매 통지)

- ① 세무서장은 전조의 공고를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열거하는 사항 및 공매와 관련된 국세액을 체납자 및 다음에 열거하는 자 중 알고 있 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공매재산에 대해 교부요구를 한 자
- 2. 공매재산상에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유 치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3. 환가 동의 행정기관 등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공 매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중 알고 있는 자에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채권에 대해 제 130조제1항(채권액의 확인 방법)에서 규정 하는 채권현재액신청서를 재산의 매각결정 을 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 용의 최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97조(공매 장소)

공매는 공매재산이 소재하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所で行うことができる。

第九十八条 (見積価額の決定)

税務署長は、近傍類似又は同種の財産の取引価格、公売財産から生ずべき収益、公売財産の原価その他の公売財産の価格形成上の事情を適切に勘案して、公売財産の見積価額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税務署長は、差押財産等を公売するための見積価額の決定であること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見積価額を決定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鑑定人にその評価を委託し、その評価額を参考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九条 (見積価額の公告等)

税務署長は、公売財産のうち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を公売に付するときは、当該各号に掲げる日までに見積価額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不動産、船舶及び航空機 公売の日から三 日前の日
- 二 せり売の方法又は第百五条第一項(複数落 札入札制)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公売する財 産 (前号に掲げる財産を除く。)公売の日の 前日 (当該財産につき第九十五条第一項ただ し書 (公売公告)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認 めるときは、公売の日)
- 三 その他の財産で税務署長が公告を必要と認めるもの 公売の日の前日
- 2 税務署長は、見積価額を公告しない財産を

서 실시할 수 있다.

제98조(견적가액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근방 유사 또는 동종 재산의 거래가격, 공매재산에서 발생할 수익, 공매 재산의 원가, 그 밖에 공매재산의 가격형성 상의 사정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매재산의 견적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 서장은 압류재산 등을 공매하기 위한 견적 가액의 결정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가 액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위탁하고, 그 평가 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9조(견적가액의 공고 등)

-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을 공매에 붙일 때에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날까지 견적가액을 공고 하여야 한다.
- 1.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공매일부터 3일 전의 날
- 2. 경매의 방법 또는 제105조제1항(복수낙찰 입찰제)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공매하는 재산(전호에 열거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공매일의 전날(해당 재산에 대해 제95조제1항 단서(공매공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매일)
- 3. 그 밖의 재산으로 세무서장이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공매일의 전날
- ② 세무서장은 견적가액을 공고하지 않는

公売するときは、その見積価額を記載した書 面を封筒に入れ、封をして、公売をする場所 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九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ただし、税務署長は、公売財産が動産であるときに限り、その財産に見積価額を記載した用紙をはりつけて、この公告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4 税務署長は、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公売 財産上に賃借権(不動産又は船舶に係るもの に限る。)又は地上権があるときは、あわせ てその存続期限、借賃又は地代その他これら の権利の内容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条 (公売保証金)

公売財産の入札等をしようとする者(以下「入札者等」という。)は、税務署長が公売財産の見積価額の百分の十以上の額により定める公売保証金を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税務署長は、公売財産の見積価額が政令で定める金額以下である場合又は買受代金を売却決定の日に納付させるときは、公売保証金の提供を要しないものと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現金 (国税の納付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小切手のうち銀行の振出しに係るもの及びそ の支払保証のあるものを含む。次号、第四項 及び第百十五条第三項(買受代金の納付の期 限等)において同じ。)で納付する方法
- 二 入札者等と保証銀行等(銀行その他税務署 長が相当と認める者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 第四項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おいて、当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견적가액을 기재한 서면을 봉투에 넣고 봉하여 공매할 장소에 두어야 한다.

- ③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공매재 산이 동산일 때에 한하여 재산에 견적가액 을 기재한 용지를 붙여서 그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경우, 공매재산상에 임차권(부동산 또는 선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또는 지상권이 있을 때에는 그 존속기한, 차임 또는 지대, 그 밖에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공매보증금)

- ① 공매재산의 입찰 등을 하려는 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견적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액수로정하는 공매보증금을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견적가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매수대금을 매각결정일에 납부하도록 할 때에는 공매보증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할 수 있다.
- 1. 현금(국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수표 중 은행 발행과 관련된 것 및 지불보증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호, 제4항 및 제 115조제3항(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서 같다)으로 납부하는 방법
- 2. 입찰자 등과 보증은행 등(은행, 그 밖에 세무서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 간에 해

該入札者等に係る公売保証金に相当する現金 を税務署長の催告により当該保証銀行等が納 付する旨の契約(財務省令で定める要件を満 たすものに限る。)が締結されたことを証す る書面を税務署長に提出する方法

- 2 入札者等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場合を除き、公売保証金を提供した後でなければ、入札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公売財産の買受人は、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方法により提供した公売保証金がある場合には、当該公売保証金を買受代金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百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売却決定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当該公売保証金をその公売に係る国税に充て、なお残余があるときは、これを滞納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税務署長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方法により公売保証金を提供した入札者等に対して第百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場合には、当該入札者等に係る保証銀行等に当該公売保証金に相当する現金を納付させ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保証銀行等が納付した現金は、当該処分を受けた者が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方法により提供した公売保証金とみなして、前項ただし書の規定を適用する。
- 5 前項の規定は、税務署長が、第百八条第二項(公売実施の適正化のための措置)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第百十五条第四項」とあるのは「第百八条第二項(公売実施の適正化のための措置)」と、「前項ただし

당 입찰자 등과 관련된 공매보증금에 해당 하는 현금을 세무서장의 최고에 의해 해당 보증은행 등이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재무 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 정한다)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

- ② 입찰자 등은 전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매보증금을 제공한후에만 입찰 등을 할 수 있다.
- ③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공매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공매보증금을 공매와 관련된 국세에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공매보증금을 제공한 입찰자 등에 대해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경우에는 해당 입찰자 등과 관련된 보증은행 등에 해당 공매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증은행 등이 납부한 현금은 해당 처분을 받은자가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공매보증금으로 보고 전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전항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제108조제2항 (공매 실시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전항 중 "제115조제4항"은 "제108조제2항(공매 실시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으로, "전항 단서"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본

書」とあるのは「同条第三項」と読み替える ものとする。

6 税務署長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 遅滞なく、当該各号に規定する公売保証金を その提供した者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百四条から第百五条まで(最高価申込者 等の決定)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込者及び次 順位買受申込者(以下この項、第百六条第一 項及び第二項(入札又は競り売りの終了の告 知等)、第百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 百十四条(買受申込み等の取消し)において 「最高価申込者等」という。)を定めた場合 において、他の入札者等の提供した公売保証 金があるとき。
- 二 入札等の価額の全部が見積価額に達しない ことその他の理由により最高価申込者を定め 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入札者 等の提供した公売保証金があるとき。
- 三 第百十四条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込者等又 は買受人がその入札等又は買受けを取り消し 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提供した公売保証 金があるとき。

四 第百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込者が買受代金を納付した場合において、最高価申込者が提供した公売保証金で第三項本文の規定により買受代金に充てたもの以外のもの又は次順位買受申込者が提供した公売保証金があるとき。

五 第百十七条 (国税の完納による売却決定の 取消し)の規定により売却決定が取り消され た場合において、買受人の提供した公売保証 다.

- ⑥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매보증금을 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104조부터 제105조까지(최고가신청자 등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청자 및 차순위 매수신청자(이하 이 항, 제106조제1 항과 제2항(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 고지 등), 제10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14조(매 수신청 등의 취소)에서 "최고가신청자 등"이 라 한다)를 정한 경우, 다른 입찰자 등이 제 공한 공매보증금이 있을 때
- 2. 입찰 등의 가액의 전부가 견적가액에 달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최고가신청자를 정할 수 없었던 경우, 입찰자 등이 제공한 공매보증금이 있을 때
- 3.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청자 등 또는 매수인이 입찰 등 또는 매수를 취소한 경우, 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금이 있을 때
- 4.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청 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최고가신청자 가 제공한 공매보증금으로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금에 충당한 것 이외의 것 또는 차순위 매수신청자가 제공한 공매 보증금이 있을 때
- 5. 제117조(국세 완납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

金があるとき。

第百一条(入札及び開札)

入札を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住所又は居 所、氏名(法人にあつては、名称。以下同 じ。)、公売財産の名称、入札価額その他必 要な事項を記載した入札書に封をして、これ を徴収職員に差し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の場合において、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行 政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 百五十一号)第六条第一項(電子情報処理組 織による申請等)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 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入札がされる 場合には、入札書に封をすることに相当する 措置であつて財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もつて 当該封をすることに代えるものとする。

- 2 入札者は、その提出した入札書の引換、変更又は取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開札をするときは、徴収職員は、入札者を 開札に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 し、入札者が立ち会わないときは、税務署所 属の他の職員を開札に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 らない。

第百二条(再度入札)

税務署長は、入札の方法により差押財産等を 公売する場合において、入札者がないとき、 又は入札価額が見積価額に達しないときは、 直ちに再度入札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 合においては、見積価額を変更することがで きない。

第百三条 (競り売り)

우, 매수인이 제공한 공매보증금이 있을 때

제101조(입찰 및 개찰)

- ① 입찰을 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법인은 명칭. 이하 같다), 공매재산의 명칭, 입찰가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를 봉하여 이를 징수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6조제1항(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하는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봉하는 것을 대신한다.
-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 ③ 개찰을 할 때에는 징수 직원은 입찰자를 개찰에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입회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에 소속된다른 직원을 개찰에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제102조(재입찰)

세무서장은 입찰의 방법으로 압류재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자가 없을 때나 입찰가 액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견적가액 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3조(경매)

競り売りの方法により差押財産等を公売する ときは、徴収職員は、その財産を指定して、 買受けの申込み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徴収職員は、競り売り人を選び、差押財産等の競り売りを取り扱わせることができる。
- 3 前条の規定は、差押財産等の競り売り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四条 (最高価申込者の決定)

徴収職員は、見積価額以上の入札者等のうち 最高の価額による入札者等を最高価申込者と 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最高の価額の入札者 等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更に入札等をさせ て定め、なおその入札等の価額が同じとき は、くじで定める。

第百四条の二(次順位買受申込者の決定)

徴収職員は、入札の方法により不動産、船舶、航空機、自動車、建設機械、小型船舶、債権又は電話加入権以外の無体財産権等(以下「不動産等」という。)の公売をした場合において、最高価申込者の入札価額」という。)において「最高入札価額」という。)最高入札価額以上で、かつ、最高入札価額から公売保証金の額を控除した金額以上であるものに限る。第三項においてによる入札者(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くじで最高価申込者を定めた場合には、当該最高価申込者以外の最高の価額の入札者とする。第三項において同じ。)から次順位による関受けの申込みがあるときは、その者を次順位買受申込者と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

-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 등을 공매할 때에는 징수 직원은 재산을 지정하여 매수 신청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정수 직원은 경매인을 선정하여 압류재산 등의 경매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전조의 규정은 압류재산 등의 경매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104조(최고가신청자의 결정)

- ① 정수 직원은 견적가액 이상의 입찰자 등 중 최고가액으로 입찰한 입찰자 등을 최고 가신청자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최고가액의 입찰자 등이 2 인 이상 있을 때에는 다시 입찰 등을 하도 록 정하고 여전히 입찰 등의 가액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04조의 2(차순위 매수신청자의 결정)

① 징수 직원은 입찰의 방법으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채권 또는 전화가입권 이외의 무체재산권 등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공매를 한경우, 최고가신청자의 입찰가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입찰가액"이라 한다) 다음으로 높은 가액(견적가액 이상이고, 최고입찰가액에서 공매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금액 이상인것에 한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 의한 입찰자(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최고가신청자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최고가신청자 이외의 최고가액의 입찰자로 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차순위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차순위 매수신청자로

61

2 前項の次順位による買受けの申込みは、最高価申込者の決定後直ち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最高入札価額に次ぐ高い価額による入札者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くじで定める。

第百五条(複数落札入札制による最高価申込 者の決定)

税務署長は、種類及び価額が同じ財産を一時に多量に入札の方法により公売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財産の数量の範囲内において入札をしようとする者の希望する数量及び単価を入札させ、見積価額以上の単価の入札者のうち、入札価額の高い入札者から順次その財産の数量に達するまでの入札者を最高価申込者とする方法(以下「複数落札入札制」という。)に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最高価申込者となるべき最後の順位の入札者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入札数量の多いものを先順位の入札者とし、入札数量が同じときは、くじで先順位の入札者を定める。

2 複数落札入札制による場合において、最高 価申込者のうち最後の順位の入札者の入札数 量が他の最高価申込者の入札数量とあわせて 公売財産の数量をこえるときは、そのこえる 入札数量については、入札がなかつたものと する。

3 税務署長は、複数落札入札制による最高価申込者に対して売却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買受人のうちに買受代金をその納付の期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차순위에 의한 매수신청은 최고 가신청자 결정 후 즉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최고입찰가액 다음으로 높은 가액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05조(복수낙찰 입찰제에 의한 최고가신청 자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종류 및 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일시에 다량으로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산의 수량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려는 자가희망하는 수량 및 단가를 입찰하도록 하여, 견적가액 이상의 단가 입찰자 중 입찰가액이 높은 입찰자부터 순차로 재산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최고가신청자로 하는 방법(이하 "복수낙찰 입찰제"라 한다)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최고가신청자가 될 최후순위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선순위 입찰자로 하고, 입찰 수량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선순위 입찰자를 정한다.

② 복수낙찰 입찰제에 의한 경우, 최고가신 청자 중 최후순위의 입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최고가신청자의 입찰수량과 합쳤을 때 공매재산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하는 입찰수량에 대해서는 입찰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복수낙찰 입찰제에 의한 최 고가신청자에 대해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 수인 중에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限までに納付しない者があるときは、開札に 引き続き売却決定を行い、かつ、直ちに代金 を納付させるときに限り、その者に売却決定 をした数量の範囲内において、まず、前項の 規定により入札がなかつたものとされた入札 数量(買受代金を納付しない買受人の同項の 規定により入札がなかつたものとされた入札 数量を除く。)につき入札があつたものと し、次に、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 込者とならなかつた者を最高価申込者とす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項後 段及び前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六条(入札又は競り売りの終了の告知 等)

徴収職員は、最高価申込者等を定めたときは、直ちにその氏名及び価額(複数落札入札制による場合には、数量及び単価。次項において同じ。)を告げた後、入札又は競り売りの終了を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公売した財産が不動産等であるときは、税務署長は、最高価申込者等の氏名、その価額並びに売却決定をする日時及び場所を滞納者及び第九十六条第一項各号(公売の通知)に掲げる者(以下「利害関係人」という。)のうち知れている者に通知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九十五条第二項(公売公告の方法)の規定は、前項の公告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七条 (再公売)

税務署長は、公売に付しても入札者等がない とき、入札等の価額が見積価額に達しないと 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개찰에 계속해서 매각결정을 하고, 즉시 대금을 납부하도록할 때에 한하여 그 자에 대해 매각결정을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우선 전항의 규정에따라 입찰이 없던 것으로 한 입찰수량(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의 같은 항의규정에 따라 입찰이 없던 것으로 한 입찰수량을 제외한다)에 대해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청자가 되지 못했던 자를 최고가신청자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항후단 및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 고지 등)

① 정수 직원은 최고가신청자 등을 정했을 때에는 즉시 성명 및 가액(복수낙찰 입찰제에 의한 경우에는 수량 및 단가. 다음 항에서 같다)을 고지한 후, 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공매한 재산이 부동산 등일 때에는 세무서장은 최고가신청자 등의 성명, 가액 및 매각결정을 할 일시와 장소를 체납자 및 제96조제1항 각 호(공매 통지)에 열거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중알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러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95조제2항(공매공고의 방법)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7조(재공매)

① 세무서장은 공매에 붙여도 입찰자 등이 없을 때, 입찰 등의 가액이 견적가액에 달하

き、又は次順位買受申込者が定められ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次条第二項若しくは第百十五条第四項(売却決定の取消し)の規定により売却決定を取り消したときは、更に公売に付するものとする。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公売に付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売財産の見積価額の変更、第九十五条第一項本文(公売公告)の期間の短縮その他公売の条件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九十六条(公売の通知)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売が直前の公売期日から十日以内に行われるときは、適用し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公売に付する場合における第九十九条第一項第一号(見積価額の公告の日)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公売の日から三日前の日」とあるのは、「公売の日の前日」とする。

第百八条 (公売実施の適正化のための措置)

税務署長は、次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事実がある者については、その事実があつた後二年間、公売の場所に入ることを制限し、若しくはその場所から退場させ、又は入札等をさせないことができる。その事実があつた後二年を経過しない者を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として使用する者及びこれらの者を入札等の代理人とする者についても、また同様とする。

一 入札等をしようとする者の公売への参加若 しくは入札等、最高価申込者等の決定又は買 受人の買受代金の納付を妨げた者 지 않을 때나 차순위 매수신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다음 조 제2항 또는 제115조제4항(매각결정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매각결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시 공매에붙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붙이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매재산의 견적가액의 변경, 제95조제1항 본문(공매공고)의 기간의 단축, 그 밖의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96조(공매 통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매가 직전의 공매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붙이는 경우의 제99조제1항제1호(견적가액의 공고일)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호 중 "공매일부터 3일 전의 날"은 "공매일의 전날"로한다.

제108조(공매 실시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

① 세무서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 장소에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장하도록 하거나 입찰 등을 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않은 자를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로 사용하는 자 및 이러한 자를 입찰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자에 대하여도 같다.

1. 입찰 등을 하려는 자의 공매 참가 또는 입찰 등, 최고가신청자 등의 결정 또는 매수 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자

- 二 公売に際して不当に価額を引き下げる目的 をもつて連合した者
- 三 偽りの名義で買受申込みをした者

四 正当な理由がなく、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までにその代金を納付しない買受人

五 故意に公売財産を損傷し、その価額を減少させた者

六 前各号に掲げる者のほか、公売又は随意契 約による売却の実施を妨げる行為をした者

- 2 前項の規定に該当する者の入札等又はその者を最高価申込者等とする決定については、 税務署長は、その入札等がなかつたものと し、又はその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も のとする。
-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処分を受けた 者の納付した公売保証金があるときは、その 公売保証金は、国庫に帰属する。この場合に おいて、第百条第六項(公売保証金の返還) の規定は、適用しない。
- 4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関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入札者等の身分に関する証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三款 随意契約による売却

第百九条(随意契約による売却)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税務 署長は、差押財産等を、公売に代えて、随意 契約により売却することができる。

- 2. 공매 시에 부당하게 가액을 인하하려는 목적으로 연합한 자
- 3. 허위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
- 5. 고의로 공매재산을 손상시켜 그 가액을 감소시킨 자
-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실시를 방해하는 행 위를 한 자
-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 등 또는 그 자를 최고가신청자 등으로 하는 결 정에 대해서 세무서장은 그 입찰 등이 없었 던 것으로 하거나 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 다.
- ③ 전항의 경우, 같은 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한 공매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6항(공매보증금의 반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자 등의 신 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제109조(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등을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一 法令の規定により、公売財産を買い受けることができる者が一人であるとき、その財産の最高価額が定めら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価額により売却するとき、その他公売に付することが公益上適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 二 取引所の相場がある財産をその日の相場で 売却するとき。
- 三 公売に付しても入札等がないとき、入札等の価額が見積価額に達しないとき、又は第百十五条第四項(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等)の規定により売却決定を取り消したとき。
- 2 第九十八条 (見積価額の決定) の規定は、 前項第一号又は第三号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 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同号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ときは、その見積 価額は、その直前の公売における見積価額を 下つてはならない。
- 3 税務署長は、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差押財産等が動産であるときは、あらかじめ公告した価額により売却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九十六条(公売の通知)及び第百七条第 三項(再公売)の規定は、差押財産等を随意 契約により売却する場合について、第百六条 第二項及び第三項(入札又は競り売りの終了 の告知等)の規定は、随意契約により買受人 となるべき者を決定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九十六条第一項中 「前条の公告をしたときは」とあるのは「随 意契約により売却をする日の七日前までに」 と、「通知し」とあるのは「通知書を発し」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가 1인일 때, 그 재산의 최고가액이 정해진 경우에 그 가액으로 매각할 때, 그 밖에 공매에 붙이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2.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재산을 그 날의 시세로 매각할 때
- 3. 공매에 붙여도 입찰 등이 없을 때, 입찰 등의 가액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않을 때 또는 제115조제4항(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했을 때
- ② 제98조(견적가액의 결정)의 규정은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호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그 견적가액 은 직전 공매의 견적가액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압류재산 등이 동산일 때에는 미 리 공고한 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④ 제96조(공매 통지) 및 제107조제3항(재공매)의 규정은 압류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하고, 제106조제2항과 제3항(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 고지 등)의 규정은 수의계약으로 매수인이 될자를 결정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 중 "전조의 공고를 했을 때는"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날의 7일전까지"로, "통지하여"는 "통지서를 발부하여"로 본다.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十条(国による買入れ)

国は、前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見積価額でその財産を買い入れることができる。

第四款 売却決定

第百十一条 (動産等の売却決定)

税務署長は、動産、有価証券又は電話加入権 を換価に付するときは、公売をする日(随意 契約により売却する場合には、その売却する 日。以下「公売期日等」という。)におい て、最高価申込者(随意契約により売却する 場合における買受人となるべき者を含む。以 下同じ。)に対して売却決定を行う。

第百十二条(動産等の売却決定の取消)

換価をした動産又は有価証券に係る売却決定 の取消は、これをもつて買受代金を納付した 善意の買受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買受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により損害が生じた者がある場合には、その生じたことについてその者に故意又は過失があるときを除き、国は、その通常生ずべき損失の額を賠償する責に任ずる。この場合において、他に損害の原因について責に任ずべき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する求償権の行使を妨げない。

第百十三条 (不動産等の売却決定)

제110조(국가에 의한 매입)

국가는 전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견적가액으로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제4관 매각결정

제111조(동산 등의 매각결정)

세무서장은 동산, 유가증권 또는 전화가입권을 환가에 붙일 때에는 공매를 하는 날(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날. 이하 "공매기일 등"이라 한다)에 최고가신청자(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매수인이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매각결정을 한다.

제112조(동산 등의 매각결정의 취소)

- ① 환가를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매각결정의 취소는 이로써 매수대금을 납부 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대해 그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는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액수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13조(부동산 등의 매각결정)

税務署長は、不動産等を換価に付するときは、公売期日等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した日(以下「売却決定期日」という。) において最高価申込者に対して売却決定を行う。

- 2 次順位買受申込者を定めてい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処分又は行為があつたときは、税務署長は、当該各号に掲げる日において次順位買受申込者に対して売却決定を行う。
- 一 税務署長が第百八条第二項(最高価申込者 等の決定の取消し)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込 者に係る決定の取消しをしたとき。 当該最高 価申込者に係る売却決定期日
- 二 最高価申込者が次条の規定により入札の取消しをしたとき。 当該入札に係る売却決定期 日
- 三 最高価申込者である買受人が次条の規定により買受けの取消しをしたとき。 当該取消しをした日

四 税務署長が第百十五条第四項(売却決定の取消し)の規定により最高価申込者である買受人に係る売却決定の取消しをしたとき。 当該取消しをした日

第百十四条(買受申込み等の取消し)

換価に付した財産(以下「換価財産」という。)について最高価申込者等の決定又は売却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国税通則法第百五条第一項ただし書(不服申立てがあつた場合の処分の制限)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

-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등을 환가에 붙일 때에는 공매기일 등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날(이하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에 최고가신청자에 대해 매각결정을 한다.
- ② 차순위 매수신청자를 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각호에 열거하는 날에 차순위 매수신청자에 대해 매각결정을 한다.
- 1. 세무서장이 제108조제2항(최고가신청자 등의 결정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 청자와 관련된 결정의 취소를 했을 때: 해당 최고가신청자와 관련된 매각결정기일
- 2. 최고가신청자가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취소를 했을 때: 해당 입찰과 관련된 매각결정기일
- 3. 최고가신청자인 매수인이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 취소를 했을 때: 해당 취소를 한 날
- 4. 세무서장이 제115조제4항(매각결정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신청자인 매수인과 관련된 매각결정의 취소를 했을 때: 해당취소를 한 날

제114조(매수신청 등의 취소)

환가에 붙인 재산(이하 "환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해 최고가신청자 등의 결정 또는 매각결정을 한 경우, 「국세통칙법」 제105조제1항 단서(불복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분의 제한),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체납

き滞納処分の続行の停止があつたときは、その停止している間は、その最高価申込者等又は買受人は、その入札等又は買受け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五款 代金納付及び権利移転

第百十五条 (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等)

換価財産の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は、売却決定の日(買受人が次順位買受申込者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同日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した日)とする。

- 2 税務署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前項の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 し、その期間は、三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 ない。
- 3 買受人は、買受代金を第一項の期限までに現金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税務署長は、買受人が買受代金を第一項の期限までに納付しないときは、その売却決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百十六条 (買受代金の納付の効果)

買受人は、買受代金を納付した時に換価財産 を取得する。

2 徴収職員が買受代金を受領したときは、その限度において、滞納者から換価に係る国税 を徴収したものとみなす。

第百十七条(国税等の完納による売却決定の 取消し)

税務署長は、換価財産に係る国税(特定参加

처분 속행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최고가신청자 등 또는 매수 인은 그 입찰 등 또는 매수를 취소할 수 있 다.

제5관 대금납부 및 권리이전

제115조(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① 환가재산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 정일(매수인이 차순위 매수신청자인 경우는 같은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 ②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6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했을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 ② 징수 직원이 매수대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환가와 관련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국세 등의 완납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세무서장은 환가재산과 관련된 국세(특정참

差押不動産を換価する場合にあつては、特定 参加差押えに係る国税又は換価同意行政機関 等の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に係る国税、地方 税若しくは公課)の完納の事実が買受人の買 受代金の納付前に証明されたときは、その売 却決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十八条 (売却決定通知書の交付)

税務署長は、換価財産(有価証券を除く。) の買受人がその買受代金を納付したときは、 売却決定通知書を買受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ただし、動産については、その交付 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百十九条(動産等の引渡し)

税務署長は、換価した動産、有価証券又は自動車、建設機械若しくは小型船舶(徴収職員が占有したものに限る。)の買受人が買受代金を納付したときは、その財産を買受人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税務署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その財産を滞納者又は第三者に保管させているときは、売却決定通知書を買受人に交付する方法によりその財産の引渡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をした税務署長は、その旨を滞納者又は第三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十条 (有価証券の裏書等)

税務署長は、換価した有価証券を買受人に引き渡す場合において、その証券に係る権利の移転につき滞納者に裏書、名義変更又は流通回復の手続をさせる必要があるときは、期限を指定して、これらの手続をさせなければな

가압류 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는 특정참 가압류와 관련된 국세 또는 환가 동의 행정 기관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완납 사실이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전에 증명되었을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8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

세무서장은 환가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 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에 대해서는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9조(동산 등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환가한 동산, 유가증권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징수 직원 이 점유한 것에 한한다)의 매수인이 매수대 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매수인에 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했을 때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를 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유가증권의 이서 등)

① 세무서장은 환가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과 관련된 권리이전에 대해 체납자에게 이서, 명의변경 또는 유통회복의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도

らない。

2 税務署長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滞納者がその期限までに同項の手続をしないときは、滞納者に代つてその手続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十一条(権利移転の登記の嘱託)

税務署長は、換価財産で権利の移転につき登記を要するものについては、不動産登記法 (平成十六年法律第百二十三号) その他の法 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その買受 代金を納付した買受人の請求により、その権 利の移転の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百二十二条(債権等の権利移転の手続)

税務署長は、換価した債権又は第七十三条第 一項(電話加入権等の差押手続)若しくは第 七十三条の二第一項(振替社債等の差押手 続)に規定する財産の買受人がその買受代金 を納付したときは、売却決定通知書を第三債 務者等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六十五条(債権証書の取上げ)(第七十三条第五項(権利証書の取上げ)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取り上げた証書があるときは、これを買受人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十三条(権利移転に伴う費用の負担)

第百二十条第二項(有価証券の裏書等の代位)の規定による手続に関する費用及び第百二十一条(権利移転の登記の嘱託)の規定による嘱託に係る登記の登録免許税その他の費

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 체납자가 그 기 한까지 같은 항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2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세무서장은 환가재산으로서 권리이전에 대해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그 밖의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청구에 의해 그 권리이전의 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

① 세무서장은 환가한 채권 또는 제73조제1 항(전화가입권 등의 압류절차) 또는 제73조 의2제1항(대체사채 등의 압류절차)에서 규 정하는 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했 을 때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제3채무자 등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65조(채권증서의 몰수)(제73조제5항(권리증서의 몰수)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증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3조(권리이전에 따른 비용의 부담)

제120조제2항(유가증권의 이서 등의 대위) 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한 비용 및 제121 조(권리이전 등기의 촉탁)의 규정에 따른 촉탁과 관련된 등기의 등록면허세 및 그 밖 用は、買受人の負担とする。

第百二十四条(担保権の消滅又は引受け)

換価財産上の質権、抵当権、先取特権、留置権、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係る権利及び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本登録を含む。)でその財産の差押え後にされたものに係る権利は、その買受人が買受代金を納付した時に消滅する。第二十四条(譲渡担保権者の物的納税責任)の規定により譲渡担保財産に対し滞納処分を執行した場合において、滞納者がした再売買の予約の仮登記があるときは、その仮登記により保全される請求権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税務署長は、不動産、船舶、航空機、自動車又は建設機械を換価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その財産上の質権、抵当権又は先取特権(登記が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負担を買受人に引き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引受けがあつた質権、抵当権又は先取特権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 一 差押えに係る国税(特定参加差押不動産を 換価する場合にあつては、換価同意行政機関 等の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に係る地方税又は 公課を含む。)がその質権、抵当権又は先取 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次いで徴収する ものであるとき。
- 二 その質権、抵当権又は先取特権により担保 される債権の弁済期限がその財産の売却決定 期日から六月以内に到来しないとき。

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4조(담보권의 소멸 또는 인수)

① 환가재산상의 질권, 저당권, 선취특권, 유치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관련된 권리 및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본등록을 포함한다)로서 그 재산의 압류 후에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했을 때에 소멸한다. 제24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의 규정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한경우, 체납자가 한 재매매 예약의 가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청구권에 대하여도 같다.

② 세무서장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환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그 재산상의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 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가 있은 질권, 저당권 또는 선 취특권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압류와 관련된 국세(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는 환가 동의 행정기관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포함한다)가 질권, 저당권또는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다음으로 징수하는 것일 때

2. 그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기한이 그 재산의 매 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 을 때 三 その質権、抵当権又は先取特権を有する者から申出があつたとき。

第百二十五条(換価に伴い消滅する権利の登 記のまつ消の嘱託)

税務署長は、第百二十一条(権利移転の登記の嘱託)の規定により権利の移転の登記を嘱託する場合において、換価に伴い消滅する権利に係る登記があるときは、あわせてそのまつ消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十六条 (担保責任)

民法第五百六十八条(強制競売における担保 責任)の規定は、差押財産等の換価の場合に ついて準用する。

第百二十七条(法定地上権等の設定)

土地及びその上にある建物又は立木(以下この条において「建物等」という。)が滞納者の所有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土地又は建物等の差押があり、その換価によりこれらの所有者を異に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建物等につき、地上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地上権及びその目的となる 土地の上にある建物等が滞納者に属する場合 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 中「地上権が設定された」とあるのは、「地 上権の存続期間内において土地の賃貸借をし た」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その権利の存続期間及び地代は、当事者の請求により裁判所が 定める。 3. 그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을 가진 자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때

제125조(환가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 말소 촉탁)

세무서장은 제12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의 등기를 촉탁하 는 경우, 환가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와 관련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말소도 함께 관 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26조(담보책임)

「민법」제568조(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압류재산 등의 환가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7조(법정지상권 등의 설정)

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또는 입목(이하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이 체납자의소유에 속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의압류가 있어 그 환가에 의해 이들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는 건물 등에 대해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지상권 및 그 목적이 되는 토지 지상의 건물 등이 체납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지상권이 설정된"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의 임대차를 한"으로 본다.
- ③ 전2항의 경우, 권리의 존속기간 및 지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第四節 換価代金等の配当

第百二十八条(配当すべき金銭)

税務署長は、次に掲げる金銭をこの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配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差押財産又は特定参加差押不動産(次条第 一項第三号及び第百三十六条(滞納処分費の 範囲)において「差押財産等」という。)の 売却代金
- 二 有価証券、債権又は無体財産権等の差押え により第三債務者等から給付を受けた金銭
- 三 差し押さえた金銭
- 四 交付要求により交付を受けた金銭
- 2 第八十九条第三項(換価する財産の範囲等)の規定により差押財産等(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差押財産等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一括して公売に付され、又は随意契約により売却された場合において、各差押財産等ごとに前項第一号に掲げる売却代金の額を定める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額は、売却代金の総額を各差押財産等の見積価額に応じてお分して得た額とする。各差押財産等ごとの滞納処分費の負担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百二十九条 (配当の原則)

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金銭 (以下「換価代金等」という。)は、次に掲 げる国税その他の債権に配当する。

제4절 화가대금 등의 배당

제128조(배당해야 할 금전)

- ① 세무서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전을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 1. 압류재산 또는 특정참가압류 부동산(다음 조 제1항제3호 및 제136조(체납처분비의 범 위)에서 "압류재산 등"이라 한다)의 매각대 금
- 2. 유가증권,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의해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
- 3. 압류한 금전
- 4. 교부요구에 의해 교부받은 금전
- ② 제89조제3항(환가하는 재산의 범위 등)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 등(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재산 등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이 일괄하여 공매에 붙여지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경우, 각 압류재산 등 별로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매각대금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액수는 매각대금의 총액을 각 압류재산 등의견적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얻은 액수로 한다. 각 압류재산 등별 체납처분비의 부담에대하여도 같다.

제129조(배당의 원칙)

① 전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금전(이하 "환가대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 에 열거하는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배당

- 一 差押えに係る国税(特定参加差押不動産の 売却代金を配当する場合にあつては、特定参 加差押えに係る国税)
- 二 交付要求を受けた国税、地方税及び公課 (特定参加差押不動産の売却代金を配当する 場合にあつては、差押えに係る国税、地方税 及び公課を含む。)
- 三 差押財産等に係る質権、抵当権、先取特権、留置権又は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
- 四 第五十九条第一項後段、第三項又は第四項(引渡命令を受けた第三者等の権利の保護)(これらの規定を第七十一条第四項(自動車、建設機械又は小型船舶の差押え)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損害賠償請求権又は借賃に係る債権
- 2 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金銭 は、それぞれ差押え又は交付要求に係る国税 に充てる。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配当した金銭に残余があるときは、その残余の金銭は、滞納者に交付する。
- 4 換価財産上に担保のための仮登記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に対する配当については、仮登記担保契約に関する法律第十三条(優先弁済請求権)(同法第二十条(土地等の所有権以外の権利を目的とする契約への準用)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を準用する。

한다.

- 1. 압류와 관련된 국세(특정참가압류 부동산 의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참가 압류와 관련된 국세)
- 2. 교부요구를 받은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특정참가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하 는 경우에는 압류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 3. 압류재산 등과 관련된 질권, 저당권, 선 취특권, 유치권 또는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4. 제59조제1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인 도명령을 받은 제3자 등의 권리보호)(이러 한 규정을 제71조제4항(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차임과 관련된 채권
- ② 전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금전은 각각 압류 또는 교부요구와 관련된 국세에 충당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한 금전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 ④ 환가재산상에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의 해당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같은 법 제20조(토지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5 換価代金等が第一項各号に掲げる国税その他の債権の総額に不足するときは、税務署長は、第二章(国税と他の債権との調整)、第五十九条第一項後段、第三項及び第四項(これらの規定を第七十一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前項並びに民法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配当すべき順位及び金額を定めて配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国税に配当された金銭を国税(附帯税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及びその延滞税又は利子税に充てるべきときは、その金銭は、まずその国税に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三十条(債権額の確認方法)

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国税、地方税又は 公課を徴収する者及び同項第三号又は第四号 に掲げる債権を有する者は、売却決定の日の 前日までに債権現在額申立書を税務署長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税務署長は、前項の債権現在額申立書を調査して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国税その他の債権を確認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債権を有する者が債権現在額申立書を提出しないときは、税務署長の調査によりその額を確認するものとする。
- 一 登記がされた質権、抵当権若しくは先取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又は担保のための仮登記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
- 二 登記することができない質権若しくは先取 特権又は留置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で知れ

을 준용한다.

⑤ 환가대금 등이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국세, 그 밖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장(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조정), 제59조제1항 후단, 제3항과 제4항(이들 규정을 제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항 및 「민법」, 그 밖의법률 규정에 따라 배당해야 할 순위 및 금액을 정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에 배당된 금전을 국세(부대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체세 또는 이자세에 충당해야 할 때에는 그 금전은 우선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0조(채권액의 확인 방법)

- ① 전조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는 자 및 같은 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채권을 가진자는 매각결정일의 전날까지 채권현재액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채권현재액신청서를 조사하여 전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국 세 및 그 밖의 채권을 확인한다. 이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현 재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 장의 조사로 그 액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등기가 된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또는 담보를 위한 가등 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2. 등기할 수 없는 질권이나 선취특권 또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알고

ているもの

三 前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債権で知れているもの

3 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債権のうち前項 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債権以外の債権を 有する者が売却決定の時までに債権現在額申 立書を提出しないときは、その者は、配当を 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第百三十一条 (配当計算書)

税務署長は、第百二十九条(配当の原則)の 規定により配当しようとするときは、政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配当を受ける債権、前 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税務署長が確認した金 額その他必要な事項を記載した配当計算書を 作成し、換価財産の買受代金の納付の日から 三日以内に、次に掲げる者に対する交付のた め、その謄本を発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債権現在額申立書を提出した者
- 二 前条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り金額を確認した債権を有する者
- 三 滞納者

第百三十二条(換価代金等の交付期日)

税務署長は、前条の規定により配当計算書の 謄本を交付するときは、その謄本に換価代金 等の交付期日を附記して告知しなければなら ない。

2 前項の換価代金等の交付期日は、配当計算書の謄本を交付のため発送した日から起算し

있는 것

3. 전조 제1항제4호에 열거하는 채권으로서 알고 있는 것

③ 전조 제1항제3호에 열거하는 채권 중 전항 제1호와 제2호에 열거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매각결정 시까지 채권현 재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131조(배당계산서)

세무서장은 제129조(배당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채권,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확인한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배당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가재산 매수대금의 납부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그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1. 채권현재액신청서를 제출한 자
- 2. 전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확인한 채권을 가진 자
- 3. 체납자

제132조(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

- ①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계 산서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등본에 환가 대금 등의 교부기일을 부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은 배당계산서등본을 교부하기 위하여 발송한 날부

て七日を経過した日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第百二十九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 号(配当を受ける債権)に掲げる債権を有す る者で前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に該 当するものがない場合には、その期間は、短 縮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三十三条 (換価代金等の交付)

税務署長は、換価代金等の交付期日に配当計算書に従つて換価代金等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 2 換価代金等の交付期日までに配当計算書に 関する異議の申出があつた場合における前項 の換価代金等の交付は、次に定めるところに よる。
- 一 その異議が配当計算書に記載された国税、 地方税又は公課の配当金額に対するものであ るときは、その行政機関等からの通知に従 い、配当計算書を更正し、又は直ちに交付す るものとする。
- 二 その異議が配当計算書に記載された国税、 地方税又は公課の配当金額を変更させないも 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異議に関係を有 する者及び滞納者がその異議を正当と認めた とき、又はその他の方法で合意したときは、 配当計算書を更正して交付するものとする。
- 三 その異議が配当計算書に記載された国税、 地方税又は公課の配当金額を変更させるその 他の債権の配当金額に関するものである場合 において、その異議に関係を有する者及び滞 納者がその異議を正当と認めたとき、又はそ の他の方法で合意したときは、配当計算書を

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배당을 받을 채권)에 열거하는 채권을 가진 자로서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위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133조(환가대금 등의 교부)

- ① 세무서장은 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에 배당계산서에 따라 환가대금 등을 교부한다.
- ② 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까지 배당계산서 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항의 환가대금 등의 교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이의가 배당계산서에 기재된 국세, 지방 세 또는 공과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것일 때 에는 행정기관 등의 통지에 따라 배당계산 서를 경정하거나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2. 이의가 배당계산서에 기재된 국세, 지방 세 또는 공과금의 배당금액을 변경하게 할수 없는 것일 경우, 이의에 관계가 있는 자및 체납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했을 때에는 배당계산서를 경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3. 이의가 배당계산서에 기재된 국세, 지방 세 또는 공과금의 배당금액을 변경하도록 하는 그 밖의 채권의 배당금액에 관한 것일 경우, 이의에 관계가 있는 자 및 체납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했을 때에는 배당계산서

更正して交付するものとし、その合意がなかったときは、その異議を参酌して配当計算書を更正して交付し、又は異議につき相当の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直ちに国税、地方税又は公課の金額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換価代金等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換価代金等を配当すべき債権が停止条件付である場合又は換価代金等を配当すべき債権が仮登記(民事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第五十三条第二項(不動産の登記請求権を保全するための処分禁止の仮処分の執行)(同法第五十四条(不動産に関する権利以外の権利についての登記又は登録請求権を保全するための処分禁止の仮処分の執行)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仮処分による仮登記を含む。)がされた質権、抵当権若しくは先取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である場合における換価代金等の交付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百三十四条 (換価代金等の供託)

換価代金等を配当すべき債権の弁済期が到来 していないときは、その債権者に交付すべき 金額は、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供託したときは、その旨を同項の債権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三十五条(売却決定の取消に伴う措置)

税務署長は、売却決定を取り消したときは、 次に掲げ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 し、第百十二条第一項(動産等の売却決定の 取消)の規定により、その取消をもつて買受 를 경정하여 교부하고,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이의를 참작하여 배당계산서를 경정하여 교부하거나 이의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금액을 교부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가대금 등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환가대금 등을 배당해야할 채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또는 환가대금 등을 배당해야할 채권이 가능기(「민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91호) 제53조제2항(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같은 법 제54조(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를 포함한다)가 된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환가대금 등의 교부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4조(환가대금 등의 공탁)

- ① 환가대금 등을 배당해야 할 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할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같은 항의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1항(동산 등의 매각결정의 취소) 의 규정에 따라 그 취소로써 매수인에게 대 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 ┃ 항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りでない。

- 一 徴収職員が受領した換価代金等の買受人へ の返還
- 二 第百二十一条(権利移転の登記の嘱託) そ の他の法令の規定により嘱託した換価に係る 権利の移転の登記のまつ消の嘱託
- 三 第百二十五条 (換価に伴い消滅する権利の 登記のまつ消の嘱託) その他の法令の規定に よる嘱託で換価に係るものによりまつ消され た質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の登記の回復の 登記の嘱託
- 2 前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嘱託した回復の登 記に係る質権者、抵当権者又は先取特権者に 対し換価代金等から配当した金額がある場合 において、これらの者がその金額を返還しな いときは、税務署長は、その金額を限度とし て、これらの者に代位することができる。こ の場合において、配当した金額がその質権、 抵当権又は先取特権により担保される債権の 一部であるときは、税務署長は、その代位し た債権者の承諾を要しないで、その代位に係 る権利を行使し、かつ、その債権者に優先し 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第五節 滞納処分費

第百三十六条 (滞納処分費の範囲)

滞納処分費は、国税の滞納処分による財産の 差押え、交付要求、差押財産等の保管、運 搬、換価及び第九十三条(修理等の処分)の 規定による処分、差し押さえた有価証券、債 権及び無体財産権等の取立て並びに配当に関

- 1. 징수 직원이 수령한 환가대금 등의 매수 인에 대한 반환
- 2. 제121조(권리이전 등기의 촉탁), 그 밖에 법령 규정에 따라 촉탁한 환가와 관련된 권 리이전 등기의 말소촉탁
- 3. 제125조(환가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말소촉탁), 그 밖에 법령 규정에 따른 촉탁으로서 환가와 관련된 것에 의해 말소 된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의 등기의 회 복등기촉탁
- ②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촉탁한 회복 등기와 관련된 질권자, 저당권자 또는 선취 특권자에게 환가대금 등에서 배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들이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한도로 이들 을 대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한 금액이 질권,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에 의해 담보되 는 채권의 일부일 때에는 세무서장은 대위 한 채권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대위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체납처분비

제136조(체납처분비의 범위)

체납처분비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교부요구, 압류재산 등의 보관, 운반, 환가 및 제93조(수리 등의 처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압류한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 재산권 등의 추심 및 배당에 관한 비용(통 する費用(通知書その他の書類の送達に要する費用を除く。)とする。

第百三十七条 (滞納処分費の配当等の順位)

滞納処分費については、その徴収の基因となった国税に先だつて配当し、又は充当する。

第百三十八条 (滞納処分費の納入の告知)

国税が完納された場合において、滞納処分費 につき滞納者の財産を差し押えようとすると きは、税務署長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滞納者に対し、納入の告知を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節 雜則

第一款 滞納処分の効力

第百三十九条(相続等があつた場合の滞納処 分の効力)

滞納者の財産について滞納処分を執行した後、滞納者が死亡し、又は滞納者である法人が合併により消滅したときは、そ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続行することができる。

- 2 滞納者の死亡後その国税につき滞納者の名 義の財産に対してした差押えは、当該国税に つきその財産を有する相続人に対してされた ものとみなす。ただし、徴収職員がその死亡 を知つてい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信託の受託者の任務が終了した場合において、新たな受託者が就任するに至るまでの間に信託財産に属する財産について滞納処分を執行した後、新たな受託者が就任したとき

지서, 그 밖의 서류의 송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체납처분비의 배당 등의 순위)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징수의 원인이 된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충당한다.

제138조(체납처분비의 납입고지)

국세가 완납된 경우, 체납처분비에 대해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 무서장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 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절 잡칙

제1관 체납처분의 효력

제139조(상속 등이 있는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했을 때에는 그 재산에대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국세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실시한 압류는 해당국세에 대해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실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징수 직원이 그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새로운 수 탁자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 행한 후,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했을 때에는

は、そ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続行することができる。

4 信託の受託者である法人の信託財産に属する財産について滞納処分を執行した後、当該受託者である法人として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分割が行われたときは、その財産につき滞納処分を続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十条(仮差押等がされた財産に対する 滞納処分の効力)

滞納処分は、仮差押又は仮処分によりその執行を妨げられない。

第二款 財産の調査

第百四十一条(質問及び検査)

徴収職員は、滞納処分のため滞納者の財産を 調査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必要と認め られる範囲内において、次に掲げる者に質問 し、又はその者の財産に関する帳簿書類(そ の作成又は保存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 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って 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 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 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の作成又は保存が 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 む。第百四十六条の二及び第百八十八条第二 号において同じ。)を検査することができ る。

一 滞納者

二 滞納者の財産を占有する第三者及びこれを 占有してい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 ある第三者 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인 법인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해당 수탁자인 법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분할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140조(가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방해받지 않는다.

제2관 재산의 조사

제141조(질문 및 검사)

징수 직원은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작성 또는 보존 대신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이 작성 또는보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제146조의2 및 제188조제2호에서같다)를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및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

三 滞納者に対し債権若しくは債務があり、又は滞納者から財産を取得し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

四 滞納者が株主又は出資者である法人

第百四十二条(捜索の権限及び方法)

徴収職員は、滞納処分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滞納者の物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つき 捜索することができる。

- 2 徴収職員は、滞納処分のため必要がある場合に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に限り、第三者の物又は住居その他の場所につき捜索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滞納者の財産を所持する第三者がその引渡をしないとき。
- 二 滞納者の親族その他の特殊関係者が滞納者の財産を所持す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引渡をしないとき。
- 3 徴収職員は、前二項の捜索に際し必要があるときは、滞納者若しくは第三者に戸若しくは金庫その他の容器の類を開かせ、又は自らこれらを開くため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十三条 (捜索の時間制限)

捜索は、日没後から日出前まで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日没前に着手した捜索は、日没後まで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2 旅館、飲食店その他夜間でも公衆が出入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については、滞納処分の

- 3.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또는 채무가 있거 나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4. 체납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

제142조(수색의 권한 및 방법)

- ① 징수 직원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 ② 징수 직원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에 한하여 제3자의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 1. 체납자의 재산을 소지한 제3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때
- 2. 체납자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체 납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인도를 하 지 않을 때
- ③ 정수 직원은 전2항의 수색 시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문 또는 금고, 그 밖의 용기류를 열도록 하거나 직접 이러한 것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

제143조(수색의 시간제한)

- ① 수색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몰 전에 착수한 수색은 일 몰 후까지 계속할 수 있다.
- ②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執行のためやむを得ない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前項本文 の規定にかかわらず、日没後でも、公開した 時間内は、捜索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十四条 (捜索の立会人)

徴収職員は、捜索をするときは、その捜索を受ける滞納者若しくは第三者又はその同居の親族若しくは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で相当のわきまえのあるもの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者が不在であるとき、又は立会いに応じないときは、成年に達した者二人以上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若しくは警察官を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四十五条(出入禁止)

徴収職員は、捜索、差押又は差押財産の搬出を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処分の執行のため支障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れらの処分をする間は、次に掲げる者を除き、その場所に出入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滞納者

- 二 差押に係る財産を保管する第三者及び第百四十二条第二項(第三者に対する捜索)の規定により捜索を受けた第三者
-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同居の親族

四 滞納者の国税に関する申告、申請その他の事項につき滞納者を代理する権限を有する者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도 공개한 시간 내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44조(수색의 입회인)

징수 직원은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을 받는 체납자 또는 제3자나 그 동거하는 친족 또 는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분별 이 있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자가 부재하거나 입회에 응하 지 않을 때에는 성년에 이른 자 2인 이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나 경찰관을 입 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출입금지)

징수 직원은 수색,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반출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을 집행하는 데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처분을 하는 동안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제외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있다.

- 1. 체납자
- 2. 압류와 관련된 재산을 보관하는 제3자및 제142조제2항(제3자에 대한 수색)의 규정에 따라 수색을 받은 제3자
- 3. 전2호에 열거하는 자의 동거 친족
- 4. 체납자의 국세에 관한 신고, 신청,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체납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

第百四十六条 (捜索調書の作成)

徴収職員は、捜索したときは、捜索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徴収職員は、捜索調書を作成した場合には、その謄本を捜索を受けた滞納者又は第三者及びこれらの者以外の立会人があるときはその立会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は、第五十四条(差押調書)の規定により差押調書を作成する場合には、 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差押調書 の謄本を前項の第三者及び立会人に交付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百四十六条の二(官公署等への協力要請)

徴収職員は、滞納処分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 必要があるときは、官公署又は政府関係機関 に、当該調査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帳簿書類 その他の物件の閲覧又は提供その他の協力を 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十七条 (身分証明書の呈示等)

徴収職員は、この款の規定により質問、検査 又は捜索をするとき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 書を携帯し、関係者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 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の款の規定による質問、検査又は捜索の 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 解してはならない。

第六章 滞納処分に関する猶予及び停止 等

제146조(수색조서의 작성)

- ① 징수 직원은 수색을 했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정수 직원은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제3자 및 이들 이외의 입회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제54조(압류조서)의 규정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압류조서등본을 전항의 제3자 및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146조의 2(관공서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징수 직원은 체납처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공서 또는 정부 관계기관에 해당 조사에 관하여 참고가 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열람 또는 제공, 그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 ① 정수 직원은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신분을 나타내 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 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이 관의 규정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수 색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 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및 정지 등

第一節 換価の猶予

第百四十八条 削除

第百四十九条 削除

第百五十条 削除

第百五十一条 (換価の猶予の要件等)

税務署長は、滞納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納税について誠実な意思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納付すべき国税(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納税の猶予の要件等)又は次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ものを除く。)につき滞納処分による財産の換価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猶予の期間は、一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その財産の換価を直ちにすることによりその事業の継続又はその生活の維持を困難に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二 その財産の換価を猶予することが、直ちに その換価をすることに比して、滞納に係る国 税及び最近において納付すべきこととなる国 税の徴収上有利であるとき。
-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 又は第百五十二条第三項(換価の猶予に係る 分割納付、通知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 する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七項の規定によ る換価の猶予の期間の延長をする場合におい 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滞納者に対 し、財産目録、担保の提供に関する書類その 他の政令で定める書類又は第百五十二条第一

제1절 화가의 유예

제148조 삭제

제149조 삭제

제150조 삭제

제151조(환가유예의 요건 등)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가납세에 대해 성실한 의지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납부할 국세(「국세통칙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납세유예의 요건 등)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재산의 환가를 즉시 함으로써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 2.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것이 즉시 환가를 하는 것에 비하여 체납과 관련된 국세 및 최근에 납부해야 할 국세를 징수하는 데 유리할 때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환가유 예 또는 제152조제3항(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국세통칙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환가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납자에게 재산목록, 담보 제공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

項の規定により分割して納付させるために必要となる書類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五十一条の二

税務署長は、前条の規定によるほか、滞納者がその国税を一時に納付することによりその事業の継続又はその生活の維持を困難に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納税について誠実な意思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国税の納期限(延納又は物納の許可の取消し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取消しに係る書面が発せられた日)から六月以内にされたその者の申請に基づき、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その納付すべき国税(まで、人の期間を限り、その納付すべき国税(まで、人の関連を関係)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ものを除く。)につき滞納処分による財産の換価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は、当該申請に係る国税以外の 国税(次の各号に掲げる国税を除く。)の滞 納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納税の猶予(次号において「納税の猶予」という。)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の申請中の国税
- 二 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又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国税(同法第四十九条第一項第四号(納税の猶予の取消し)(次条第三項又は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該当し、納税の猶予又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が取り消される

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1조의 2

- ①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체납자가 그 국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질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가 납세에 대해 성실한 의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취소와 관련된 서면이 발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그 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납부할 국세(「국세통칙법」 제46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납세유예의 요건 등)의 규정을 적용받은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국세이외의 국세(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국세를 제외한다)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국세통칙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유예(다음 호에서 "납세유예"라 한다)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 른 환가유예 신청 중인 국세
- 2. 「국세통칙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전조 제1항이나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국세(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납세유예의 취소)(다음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납세유예 또는 전조 제1항이나 전항의규정에 따른 환가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의

こととなる場合の当該国税を除く。)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の申請をしようとする者は、同項の国税を一時に納付することによりその事業の継続又はその生活の維持が困難となる事情の詳細、その納付を困難とする金額、当該猶予を受けようとする期間、その猶予に係る金額を分割して納付する場合の各納付期限及び各納付期限ごとの納付金額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に、財産目録、担保の提供に関する書類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これを税務署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五十二条(換価の猶予に係る分割納付、 通知等)

税務署長は、第百五十一条第一項(換価の猶 予の要件等) 若し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換価の猶予又は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 準用する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七項(納税 の猶予の要件等)若しくは第四項において準 用する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の 期間の延長をする場合には、その猶予に係る 金額(その納付を困難とする金額として政令 で定める額を限度とする。) をその猶予をす る期間内の各月(税務署長がやむを得ない事 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期間内の税務 署長が指定する月。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 じ。) に分割して納付させるものとする。こ の場合においては、滞納者の財産の状況その 他の事情からみて、その猶予をする期間内の 各月に納付させる金額が、それぞれの月にお いて合理的かつ妥当なものとなるようにしな ければならない。

2 税務署長は、第百五十一条第一項又は前条

해당 국세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가유예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의 국세를 일시에 납부 함으로써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지는 사정의 상세한 내용, 납부가 곤 란한 금액, 해당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유예와 관련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각 납부기한 및 각 납부기한별 납부 금액,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에 재산목록, 담보의 제공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조(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등)

① 세무서장은 제151조제1항(환가유예의 요 건 등)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 가유예 또는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국세통칙법」 제46조제7항(납세유예의 요 건 등) 또는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환가유예기간의 연장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와 관련된 금액 (납부가 곤란한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액수를 한도로 한다)을 유예를 하는 기 간 내의 각 월(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서 세무 서장이 지정하는 월.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유예를 하는 기간 내의 각 월에 납부 하도록 할 금액이 각각의 월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51조제1항 또는 전조 제1

第一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をする場合に 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差押え により滞納者の事業の継続又は生活の維持を 困難にするおそれがある財産の差押えを猶予 し、又は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3 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及び第九項、第四十七条第一項(納税の猶予の通知等)、第四十八条第三項及び第四項(果実等による徴収)並びに第四十九条第一項(第五号に係る部分を除く。)及び第三項(納税の猶予の取消し)の規定は、第百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十六条第七項中「納税者の申請に基づき、その期間」と、同条第九項中「第四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とあるのは「国税徴収法第百五十二条第一項(換価の猶予に係る分割納付、通知等)」と、それぞれ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国税通則法第四十六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及び第九項、第四十六条の二第四項及び第六項から第十項まで(納税の猶予の申請手続等)、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第三項及び第三項がに第四十九条第一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による換価の猶予による換価の指数にで、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換価の猶予により場合を含む。)」とあるのは「国税等の二第四項中「分割納付の方法により納付を行う場合にあつては、分割納付の各納付期限及び各納付期限ごとの納付金額を含む。)」と

항의 규정에 따른 환가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에 의해 체납자의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국세통칙법」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47조제1항(납세유예의 통지 등), 제48조제3항과 제4항(과실 등에 의한 징수) 및 제49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부분을 제외한다)과 제3항(납세유예의 취소)의 규정은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환가유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법 제46조제7항 중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그 기간"은 "그 기간"으로, 같은 조 제9항중 "제4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세징수법」 제152조제1항(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으로각각본다.

④ 「국세통칙법」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46조의2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납세유예의 신청절차 등), 제47조, 제48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9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따른 환가유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9항 중 "제4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세징수법」 제152조제1항(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으로, 같은 법 제46조의2제4항 중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납부를 할지 여부(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각 납부기한 및 각 납부기한별 납부금액을 포함한다)"는 "유예와 관련된 권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각 납

あるのは「その猶予に係る金額を分割して納 付する場合の各納付期限及び各納付期限ごと の納付金額」と、同条第六項中「第一項から 第四項まで」とあるのは「国税徴収法第百五 十一条の二第三項(換価の猶予の要件等)又 は同法第百五十二条第四項(換価の猶予に係 る分割納付、通知等)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 用する第四項」と、同条第七項中「第一項か ら第四項まで」とあるのは「国税徴収法第百 五十一条の二第三項又は同法第百五十二条第 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四項」 と、同条第十項中「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 とあるのは「国税徴収法第百五十一条の二第 三項又は同法第百五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読 み替えて準用する第四項」と、「前条第一項 から第三項まで又は第七項」とあるのは「同 法第百五十一条の二第一項又は同法第百五十 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七項」 と、同項第二号中「次項」とあるのは「国税 徴収法第百四十一条(質問及び検査)」と、 「同項」とあるのは「同条」と、同法第四十 七条第二項中「前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 とあるのは「国税徴収法第百五十一条の二第 三項(換価の猶予の要件等)又は同法第百五 十二条第四項(換価の猶予に係る分割納付、 通知等)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前条第 四項」と、それぞれ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節 滞納処分の停止

第百五十三条 (滞納処分の停止の要件等)

税務署長は、滞納者につき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滞納処分の執行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부기한 및 각 납부기한별 납부금액"으로, 같 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세징수법」 제151조의2제3항(환가유예 의 요건 등) 또는 같은 법 제152조제4항(환 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에서 대 체하여 준용하는 제4항"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세징수 법」제15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2 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4항"으로,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는 "「국세징수법」 제151조의2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2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 는 제4항"으로,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은 "같은 법 제151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7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 항"은 "「국세징수법」제141조(질문 및 검 사) "로, "같은 항"은 "같은 조"로, 같은 법 제47조제2항 중 "전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는 "「국세징수법」제151조의2제3항(환 가유예의 요건 등) 또는 같은 법 제152조제 4항(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 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전조 제4항"으로 각각 본다.

제2절 체납처분의 정지

제153조(체납처분정지의 요건 등)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 다.

- 一 滞納処分の執行及び租税条約等(租税条約等の実施に伴う所得税法、法人税法及び地方税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四年法律第四十六号)第二条第二号(定義)に規定する租税条約等をいう。)の規定に基づ〈当該租税条約等の相手国等(同条第三号に規定する相手国等をいう。)に対する共助対象国税(同法第十一条の二第一項(国税の徴収の共助)に規定する共助対象国税をいう。)の徴収の共助の要請による徴収(以下この項において「滞納処分の執行等」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がないとき。
- 二 滞納処分の執行等を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 生活を著しく窮迫させるおそれがあるとき。
- 三 その所在及び滞納処分の執行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がともに不明であるとき。
-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を停止したときは、その旨を滞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税務署長は、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を停止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停止に係る国税について差し押さえた財産があるときは、その差押え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を停止 した国税を納付する義務は、その執行の停止 が三年間継続したときは、消滅する。
- 5 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 を停止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国税が限定承 認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その他その国税を 徴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

- 1. 체납처분의 집행 및 조세조약 등(「조세조약 등의 실시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46호) 제2조제2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조세조약 등을 말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해당 조세조약 등의 상대국 등(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대국 등을 말한다)에 대한 공조 대상 국세(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국세 징수의 공조)에서 규정하는 공조 대상 국세를 말한다) 징수의 공조 요청에 따른 징수(이하 이 항에서 "체납처분의집행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 때
- 2.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함으로써 생활이 현저히 궁핍해질 우려가 있을 때
- 3. 소재 및 체납처분의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모두 불분명할 때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 분의 집행을 정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 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 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집행의 정지 가 3년간 계속된 때에는 소멸한다.
-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 국세가 한정승인과 관 런된 것일 때나 그 밖에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항

ときは、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国税を納付する義務を直ちに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五十四条 (滞納処分の停止の取消)

税務署長は、前条第一項各号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を停止した後三年以内に、その停止に係る滞納者につき同項各号に該当する事実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執行の停止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執行の停止を取り消したときは、その旨を滞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五十五条 削除

第百五十六条 削除

第百五十七条 削除

第三節 保全担保及び保全差押

第百五十八条 (保全担保)

納税者が消費税等(消費税を除く。)を滞納 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後その者に課すべき その国税の徴収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 認められるときは、税務署長は、その国税の 担保として、金額及び期限を指定して、その 者に国税通則法第五十条各号(担保の種類) に掲げるものの提供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する金額は、その提供を命ずる月の前月分の当該国税の額の三倍に相当する金額(その金額が前年におけるその提供を命ずる月に対応する月分及びその後二月分の当該国税の金額に満たないときは、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납부할 의무 를 즉시 소멸시킬 수 있다.

제154조(체납처분정지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전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후 3년 이내에 정지와 관련된 체납자에게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 분의 집행정지를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 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 삭제

제156조 삭제

제157조 삭제

제3절 보전담보 및 보전압류

제158조(보전담보)

① 납세자가 소비세 등(소비세를 제외한다)을 체납한 경우, 그 후 그 자에게 부과할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의 담보로 금액 및 기한을 지정하여 그 자에게 「국세통칙법」 제50조 각 호(담보의 종류)에 열거하는 것의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금액은 그 제공을 명령하는 월의 전월분의 해당 국세 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전년 의 제공을 명령하는 월에 대응하는 개월분 및 그 후 2개월분의 해당 국세 금액 미만일 その額)を限度とする。

3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国税 (酒税を除く。)の担保の提供を命じた場合 において、納税者がその指定された期限まで にその命ぜられた担保を提供しないときは、 当該国税に関し、その者の財産で抵当権の目 的となるものにつき、同項の規定により指定 した金額を限度として抵当権を設定すること を書面で納税者に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通知があつたときは、その通知を受けた納税者は、同項の抵当権を設定したもの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いて、税務署長は、抵当権の設定の登記を関係機関に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項後段の場合(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 く。)においては、その嘱託に係る書面に は、第三項の書面が同項の納税者に到達した ことを証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 い。

6 第四項後段の場合において、不動産登記法 第十六条第二項(嘱託による登記)(他の法 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 準用する同法第十八条(登記の申請方法)の 規定による嘱託をするときは、その嘱託情報 と併せて第三項の書面が同項の納税者に到達 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 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法第百十六条 第一項(官庁の嘱託による登記)の規定にか かわらず、登記義務者の承諾を得ることを要 しない。

7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担保の提

때에는 그 액수)을 한도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주세를 제외한다)의 담보의 제공을 명 령한 경우,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명령 받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국 세에 관하여 그 자의 재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설정 할 것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 다.

④ 전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같은 항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설 정등기를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전항 후단의 경우(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촉탁과 관련된 서 면에는 제3항의 서면이 같은 항의 납세자에 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⑥ 제4항 후단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 16조제2항(촉탁에 의한 등기)(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조(등기의 신청방법)의 규정에 따른 촉탁을 할 때에는 촉탁 정보와함께 제3항의 서면이 같은 항의 납세자에게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1항(관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⑦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의

供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抵当権の設定(以下「担保の提供等」という。)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命令に係る国税の滞納がない期間が継続して三月に達したときは、その担保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税務署長は、担保の提供等があつた納税者 の資力その他の事情の変化により担保の提供 等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前項 の規定にかかわらず、直ちにその解除をする ことができる。

第百五十九条(保全差押え)

納税義務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が不正に国税 を免れ、又は国税の還付を受けたことの嫌疑 に基づき、国税通則法第十一章(犯則事件の 調査及び処分)の規定による差押え、記録命 令付差押え若しくは領置又は刑事訴訟法(昭 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の規定による 押収、領置若しくは逮捕を受けた場合におい て、その処分に係る国税の納付すべき額の確 定(申告、更正又は決定による確定をいい、 国税通則法第二条第二号(定義)に規定する 源泉徴収等による国税についての納税の告知 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後にお いては当該国税の徴収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 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税務署長は、当該 国税の納付すべき額の確定前に、その確定を すると見込まれる国税の金額のうちその徴収 を確保するためあらかじめ滞納処分を執行す ることを要すると認める金額(以下この条に おいて「保全差押金額」という。)を決定す 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徴収 職員は、その金額を限度として、その者の財 産を直ちに差し押さえることができる。

제공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이하 "담보의 제공 등"이라 한다)이 있 은 경우, 제1항의 명령과 관련된 국세 체납 이 없는 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은 담보의 제공 등을 한 납세자의 재력,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담보 제공등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를 할 수있다.

제159조(보전압류)

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정 하게 국세를 면제받거나 국세를 환급받았다 는 혐의로 「국세통칙법」 제11장(범죄사건 의 조사 및 처분)의 규정에 따른 압류, 기록 명령부 압류 또는 영치 또는 「형사소송 법」(1948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따라 압수, 영치 또는 체포된 경우, 그 처분과 관 련된 국세의 납부할 액수의 확정(신고,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확정을 말하며, 「국세통 칙법」 제2조제2호(정의)에서 규정하는 원 천징수 등에 의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는 해 당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의 납부할 액 수를 확정하기 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 는 국세 금액 중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전압류금액" 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수 직원은 그 금액을 한도로 그 자의 재 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 2 税務署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所属する 国税局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3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全差押金額を決定するときは、当該保全差押金額を 同項に規定する納税義務があると認められる 者に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納税 義務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がその通知に係る 保全差押金額に相当する担保として国税通則 法第五十条各号(担保の種類)に掲げるもの を提供してその差押えをしないことを求めた ときは、徴収職員は、その差押えをすること ができない。
- 5 徴収職員は、第一号又は第二号に該当す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を、第三号に該当するときは同号に規定する担保をそれぞれ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一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を受けた者が前項に規定する担保を提供して、その差押えの解除を請求したとき。
- 二 第三項の通知をした日から六月を経過した 日までに、その差押えに係る国税につき納付 すべき額の確定がないとき。
- 三 第三項の通知をした日から六月を経過した 日までに、保全差押金額について提供されて いる担保に係る国税につき納付すべき額の確 定がないとき。
- 6 徴収職員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を 受けた者又は第四項若しくは前項第一号の担

-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소속 국세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압 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보전압류금액 을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통지를 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통지와 관련된 보전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로서 「국세통칙법」 제50조 각 호(담보의 종류)에 열거하는 것을 제공하여 압류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징수 직원은 압류를 할 수 없다.
- ⑤ 정수 직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를,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담보를 각각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를 받은 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압류의 해제를 청구했을 때
- 2. 제3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압류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 납부 할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 3. 제3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보전압류금액에 대해 제공된 담 보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 납부할 액수가 확 정되지 않았을 때
- ⑥ 징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를 받은 자나 제4항 또는 전항 제1호의 담

保を提供した者につき、その資力その他の事情の変化により、その差押え又は担保の徴取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認められ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その差押え又は担保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一項の規定による差押え又は第四項若しくは第五項第一号の担保の提供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差押え又は担保の提供に係る国税につき納付すべき額の確定があつたときは、その差押え又は担保の提供は、その国税を徴収するためにされたものとみなす。

8 第一項の規定により差し押さえた財産は、 その差押えに係る国税につき納付すべき額の 確定があつた後でなければ、換価することが できない。

9 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差し押さえるべき 財産に不足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税務 署長は、差押えに代えて交付要求をすること 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交付要 求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 い。

10 税務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差し押さえた金銭(有価証券、債権又は無体財産権等の差押えにより第三債務者等から給付を受けた金銭を含む。)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差押えに係る国税につき納付すべき額の確定がされていないときは、これを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 第一項に規定する国税の納付すべき額として確定をした金額が保全差押金額に満た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差押えを受けた者がその差押えにより損害を受けたときは、国は、

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재력 및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압류 또는 담보를 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 또는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류나 제4항 또는 제5항제1호의 담보의 제공이 있은 경우, 그 압류 또는 담보의 제공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납부할 액수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압류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압류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 납부할 액수가 확정된 후에만 환가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경우, 압류할 재산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 대신 교부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부요구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금전(유가증권,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의해 제3채무자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압류와 관련된 국세에 대해 납부할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의 납부할 액수로 확정된 금액이 보전압류금액 미만인 경우, 압류를 받은 자가 그 압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

その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この場合 において、その額は、その差押えにより通常 生ずべき損失の額とする。

第百六十条 削除

第七章 削除

第百六十一条 削除

第百六十二条 削除

第百六十三条 削除

第百六十四条 削除

第百六十五条 削除

第八章 不服審査及び訴訟の特例

第百六十六条 削除

第百六十七条 削除

第百六十八条 削除

第百六十九条 削除

第百七十条 削除

第百七十一条(滞納処分に関する不服申立て 等の期限の特例)

滞納処分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処分に関し欠陥があること(第一号に掲げる処分については、これに関する通知が到達しないことを含む。)を理由としてする不服申立て(国税通則法第十一条(災害等による期限の延長)又は第七十七条(不服申立期間)の規定により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経過したもの及び同法第七十五条第三項又は

임을 진다. 이 경우, 그 액수는 압류에 의해 통상 발생하는 손실액으로 한다.

제160조 삭제

제7장 삭제

제161조 삭제

제162조 삭제

제163조 삭제

제164조 삭제

제165조 삭제

제8장 불복심사 및 소송의 특례

제166조 삭제

제167조 삭제

제168조 삭제

제169조 삭제

제170조 삭제

제171조(체납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등의 기 한의 특례)

① 체납처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처분에 관하여 결함이 있는 것(제1호에 열 거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하 는 불복신청(「국세통칙법」 제11조(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 또는 제77조(불복 신청기간)의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것 및 같은 법 제75조 第四項(国税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の不服申立て)の規定による審査請求を除く。)は、これら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各号に定める期限までで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督促 差押えに係る通知を受けた日(その 通知がないときは、その差押えがあつたこと を知つた日)から三月を経過した日
- 二 不動産等についての差押え その公売期日 等
- 三 不動産等についての第九十五条(公売公告)の公告(第百九条第四項(随意契約による売却)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十六条(公売の通知)の通知を含む。)から売却決定までの処分 換価財産の買受代金の納付の期限

四 換価代金等の配当 換価代金等の交付期日

2 前項の規定は、国税通則法第百十五条第一項第三号(訴えの提起の特例)の規定による訴えの提起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国税通則法第十一条(災害等による期限の延長)又は第七十七条(不服申立期間)の規定により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経過したもの及び同法第七十五条第三項又は第四項(国税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の不服申立て)の規定による審査請求」とあるのは、「行政事件訴訟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三十九号)第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出訴期間)の規定により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経過した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処分につ

제3항 또는 제4항(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외 한다)은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가 아니면 할 수 없 다.

- 1. 독촉: 압류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통 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가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2.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공매기일 등
- 3. 부동산 등에 대한 제95조(공매공고)의 공고(제109조제4항(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에서 준용하는 제96조(공매 통지)의 통지를 포함한다)부터 매각결정까지의 처분: 환가재 산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4. 환가대금 등의 배당: 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
- ② 전항의 규정은 「국세통칙법」 제115조 제1항제3호(소송제기의 특례)의 규정에 따른 소송제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국세통칙법」제11조(재해 등에의한 기한의 연장) 또는 제77조(불복신청기간)의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것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 또는 제4항(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139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열거하는 처분에

き、同項に規定する不服申立てをする場合に おいて、その再調査の請求書(国税通則法第 八十一条第二項(再調査の請求書の記載事項 等)に規定する再調査の請求書をいう。)又 は審査請求書(同法第八十七条第二項(審査 請求書の記載事項等)に規定する審査請求書 をいう。)については、同法第七十七条第四 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百七十二条 (差押動産等の搬出の制限)

第五十八条第二項 (滞納者の動産等を占有する第三者に対する引渡命令) に規定する引渡命令を受けた第三者が、その命令に係る財産が滞納者の所有に属してい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命令につき不服申立てをしたときは、その不服申立ての係属する間は、当該財産の搬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百七十三条(不動産の売却決定等の取消の 制限)

第百七十一条第一項第三号(公売等に関する 不服申立ての期限の特例)に掲げる処分に欠 陥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滞納処分に関する 不服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処分 は違法ではあるが、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 るときは、税務署長、国税局長若しくは税関 長又は国税不服審判所長は、その不服申立て 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不服申立てに係る処分に続いて行われるべき処分(以下この号において「後行処分」という。)が既に行わ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その不服申立てに係る処分の違法が軽微なものであり、その後行処分に影響を及ぼさせることが適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대해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재조사청구서(「국세통칙법」 제81조제2항(재조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에서 규정하는 재조사청구서를 말한다) 또는 심사청구서(같은 법 제87조제2항(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72조(압류동산 등의 반출 제한)

제58조제2항(체납자의 동산 등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에서 규정하는 인도명령을 받은 제3자가 그 명령과 관련된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명령에 대해 불복신청을 했을 때에는 불복신청이 계속되는 동안은 해당 재산을 반출할 수 없다.

제173조(부동산 매각결정 등 취소의 제한)

① 제171조제1항제3호(공매 등에 관한 불복 신청 기한의 특례)에 열거하는 처분에 결함 이 있는 것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관한 불복 신청이 있은 경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 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세무 서장, 국세국장이나 세관장 또는 국세불복심 판소장은 그 불복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불복신청과 관련된 처분에 이어서 행해질 처분(이하 이 호에서 "후행처분"이라 한다) 이 이미 행해진 경우, 불복신청과 관련된 처 분의 위법이 경미한 것이고, 그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인정될 때 二 換価した財産が公共の用に供されている場合その他その不服申立てに係る処分を取り消すことにより公の利益に著しい障害を生ずる場合で、その不服申立てをした者の受ける損害の程度、その損害の賠償の程度及び方法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もなおその処分を取り消すことが公共の福祉に適合し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の棄 却の決定又は裁決には、処分が違法であるこ と及び不服申立てを棄却する理由を明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国に対する損害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

第九章 雜則

第百七十四条 削除

第百七十五条 削除

第百七十六条 削除

第百七十七条 削除

第百七十八条 削除

第百七十九条 削除

第百八十条 削除

第百八十一条 削除

第百八十二条(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による 滞納処分の執行)

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税務署又は国税局所属の

2. 환가한 재산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그 밖에 불복신청과 관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장해를일으키는 경우로서, 불복신청을 한 자가 받는 손해의 정도, 손해배상의 정도 및 방법,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여전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기 각의 결정 또는 재결에는 처분이 위법인 것 및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9장 잡칙

제174조 삭제

제175조 삭제

제176조 삭제

제177조 삭제

제178조 삭제

제179조 삭제

제180조 삭제

제181조 삭제

제182조(세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에 의한 체 납처분의 집행)

① 세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 또는 국세국 소속의

徴収職員に滞納処分を執行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は、差し押さえるべき財産又は差押財産がその管轄区域外にあるとき(国税局長については、その管轄区域内の地域を所轄する税務署長の管轄区域内にあるときを含む。)は、当該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は、その財産の所在地を所轄する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に滞納処分の引継ぎ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税務署長は、差押財産又は参加差押不動産 を換価に付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他の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に滞納処分の 引継ぎ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二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の引継ぎがあったときは、引継ぎを受けた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は、遅滞なく、その旨を納税者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第百八十三条(税関長による滞納処分の執 行)

税関長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税関所属の徴収職員に滞納処分を執行さ せることができる。

- 2 税関長は、差し押さえるべき財産又は差押 財産がその管轄区域外にあるときは、その財 産の所在地を所轄する税関長に滞納処分の引 継ぎ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税関長は、差し押さえるべき財産又は差押 財産が滞納処分を著しく困難とする地域にあ るときは、これらの財産の所在地を所轄する 税務署長又は国税局長に滞納処分の引継ぎを

징수 직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은 압류할 재산 또는 압류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국 세국장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세무서장 또는 국 세국장은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또는 참가압류 부 동산을 환가에 붙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세무서장 또는 국세국 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 ④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인계가 이루어진 때에는 인계를 받은 세무서장 또 는 국세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3조(세관장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

- ① 세관장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 소속의 징수 직원에게 체납처분을 집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압류할 재산 또는 압류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압류할 재산 또는 압류재산이 체납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있을 때 에는 이러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

することができる。

4 税関長は、差押財産又は参加差押不動産を 換価に付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他の税関長に滞納処分の引継ぎをするこ とができる。

5 前条第四項の規定は、前三項の規定により 滞納処分の引継ぎがあつた場合について準用 する。

第百八十四条(国税局長が徴収する場合の読 替規定)

国税通則法第四十三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十四条第一項(徴収の引継ぎ)の規定により国税局長が徴収の引継ぎを受けた場合又は第百八十二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滞納処分の引継ぎ)若しくは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国税局長が滞納処分の引継ぎ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第百五十九条第二項(保全差押の承認)、第百七十三条(不動産の売却決定の取消しの制限)及び前二条を除く。次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税務署長」又は「税務署」とあるのは、「国税局長」又は「国税局」とする。

第百八十五条(税関長が徴収する場合の読替 規定)

国税通則法第四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税関長による徴収)の規定により税関長が徴収する場合、同条第四項若しくは同法第四十四条第一項(徴収の引継ぎ)の規定により税関長が徴収の引継ぎを受けた場合又は第百八十三条第二項若しくは第四項(滞納処分の引継ぎ)の規定により税関長が滞納処分の引継ぎ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規定の適用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압류재산 또는 참가압류 부동 산을 환가에 붙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⑤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전3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의 인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4조(국세국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대체 규정)

「국세통칙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44조제 1항(징수의 인계)의 규정에 따라 국세국장이 징수를 인계받은 경우 또는 제182조제2항이나 제3항(체납처분의 인계) 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국장이 체납처분을 인계받은 경우의 이 법률(제159조제2항(보전압류의 승인), 제173조(부동산 매각결정 취소의 제한) 및 전2조를 제외한다. 다음조에서 같다)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는 "국세국장" 또는 "국세국"으로 한다.

제185조(세관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대체 규정)

「국세통칙법」 제43조제1항 단서(세관장에 의한 징수)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징수의 인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를 인계받은 경우 또는 제183조제2항이나 제4항(체납처분의 인계)의 규정에따라 세관장이 체납처분을 인계받은 경우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については、「税務署長」又は「税務署」と あるのは、「税関長」又は「税関」とする。

第百八十六条(政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差押調書、交付要求書その他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作成する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利害関係人その他の者に通知すべき事項及びこの法律の実施のための手続その他その執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十章 罰則

第百八十七条

納税者が滞納処分の執行を免れる目的でその 財産を隠ぺいし、損壊し、国の不利益に処分 し、又はその財産に係る負担を偽つて増加す る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三年以下の 懲役若しく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 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2 納税者の財産を占有する第三者が納税者に 滞納処分の執行を免れさせる目的で前項の行 為をしたときも、また同項と同様とする。
- 3 情を知つて前二項の行為につき納税者又は その財産を占有する第三者の相手方となつた 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五十万円以 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百八十八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

또는 "세무서"는 "세관장" 또는 "세관"으로 한다.

제186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압류조서, 교부 요구서, 그 밖에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 하는 서류에 기재할 사항,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자에게 통지할 사항,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 한다.

제10장 벌칙

제187조

- ① 납세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폐 또는 파손하거나, 국 가에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관 련된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 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② 납세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납세 자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항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같은 항과 같다.
- ③ 사실을 알면서도 전2항의 행위에 대해 납세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의 상대방이 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88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第百四十一条(質問及び検査)の規定による徴収職員の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又は 偽りの陳述をした者
- 二 第百四十一条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 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当該検査に関し偽 り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した帳簿書類を提示 した者

第百八十九条

法人の代表者(人格のない社団等の管理人を含む。)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又は財産に関して前二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2 人格のない社団等について前項の規定の適 用があ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代表者又は管 理人がその訴訟行為につき当該人格のない社 団等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又は被疑 者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関する法律の規定 を準用する。

附則抄

에 처한다.

- 1. 제141조(질문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 징수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 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
- 2.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 또는 기록한 장부서류를 제시한자

제189조

- ① 법인의 대표자(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관리인을 포함한다)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②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해 전항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피의자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